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2025. 12. 11.

- 목 차 -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제2조(적용원칙)	
제3조(정의)	
제2장 단체표준 등록	2
제4조(단체표준의 제정)	
제5조(단체표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조(단체표준심사위원회의 운영)	
제7조(단체표준의 등록신청)	
제8조(단체표준안의 보완)	
제9조(단체표준안의 예고)	
제10조(단체표준안의 재심사)	
제11조(심의결과의 처리)	
제12조(단체표준 적합여부확인)	
제3장 단체표준 인증	8
제1절 인증단체의 일반사항	8
제13조(인증단체의 법적책임 등)	
제14조(인증단체의 공평성 관리)	
제15조(비차별적 조건)	
제16조(기밀유지 및 정보공개)	
제17조(인증단체 변경사항 보고)	
제2절 인증단체 조직	9
제18조(인증단체의 조직구조)	
제19조(인증위원회의 구성)	
제20조(공평성위원회의 구성)	
제21조(위원회의 운영)	

제22조(공평성 보장 메커니즘)

제23조(시험원의 공평성 보장)

제3절 인증단체 자원 13

제24조(인증단체의 직원)

제2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등록 등)

제26조(인증심사원 자격의 취소·정지)

제27조(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적격성 검증)

제28조(제품검사원의 자격 운용 등)

제29조(시험·검사업무 위탁기관)

제30조(기밀유지 및 이해관계 독립)

제4절 인증 신청 및 심사 16

제31조(제품의 인증)

제32조(인증심사기준)

제33조(인증 신청 접수 및 검토)

제34조(신청의 철회 및 반려)

제35조(인증심사의 절차 등)

제36조(공장심사)

제37조(공장심사 일부면제 등)

제38조(제품심사)

제39조(제품 품질시험 일부생략)

제40조(제품인증의 심사결과 검토 및 처리)

제5절 인증 결정 및 인증서 발급 22

제41조(인증의 결정 및 인증계약의 체결)

제42조(인증의 추가 또는 변경)

제43조(인증서의 발급)

제44조(인증서의 반납)

제45조(인증서 재발행)

제46조(인증서 변경 발행)

제6절 사후관리 등 25

제47조(사후관리)

- 제48조(사후관리 대상 통보와 신청)
- 제49조(사후관리 실시결과 등)
- 제50조(공장 이전심사)
- 제51조(시판품조사 및 특별현장조사)
- 제52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 제53조(보고 등)
- 제54조(제3자의 이의신청)
- 제55조(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의 개정 조치)
- 제56조(문서의 비치·보존)
- 제57조(인증수수료 등)

제7절 인증표시와 인증취소 31

- 제58조(단체표준 인증표시)
- 제59조(허위표시)
- 제60조(인증의 취소)
- 제61조(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 신청)
- 제62조(확인서의 유효기간)
- 제63조(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 절차)

제8절 인증단체 경영시스템 34

- 제64조(경영시스템 구축 및 유지)
- 제65조(경영검토)
- 제66조(내부심사)
- 제67조(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제4장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등 35

- 제68조(표준화활동 촉진)
- 제69조(단체표준의 전환)
- 제70조(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 제71조(단체표준화 교육)
- 제72조(위원회 위원 및 인증심사원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

부 칙 36

별 표 37

별표 1(품질방침) 37
별표 2(공평성 보장 방침) 38
별표 3(공평성 관리 절차) 39
별표 4(인증단체 직원의 적격성 요건) 43
별표 5(인증심사원의 등록 취소·정지의 기준) 44
별표 6(위탁기관 관리 절차) 45
별표 7(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 46
별표 8(인증서 변경 시 첨부 자료 및 후속조치) 57
별표 9(인증심사 결과 판정 기준) 59
별표 10(인증받은자에 대한 처분 기준) 60
별표 11(인증심사일수) 63
별표 12(수수료 및 비용) 64
별표 13(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65
별표 14(경영검토 절차 및 기준) 69
별표 15(내부심사 운영 절차) 70
별표 16(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 71
별표 17(단체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의 내용·시간·주기) 72

별 지 73

별지 제1호(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73
별지 제2호(회의록) 74
별지 제3호(단체표준 이해관계인 합의성 판단 근거자료) 75
별지 제4호(단체표준 공동제정 합의서) 76
별지 제5호(인증위원회·공평성위원회 위원 위촉장) 77
별지 제6호(인증위원회·공평성위원회 위원 서약서) 78
별지 제7호(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 신청서) 79
별지 제8호(인증심사원 서약서) 80
별지 제9호(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현황) 81
별지 제10호(단체표준인증심사원증) 82
별지 제11호(업무협력협약서) 83

별지 제12호(단체표준인증 신청서)	85
별지 제13호(공장심사 심사보고서)	86
별지 제14호(인증계약서)	97
별지 제15호(단체표준 인증서)	103
별지 제16호(인증변경 신청서)	104
별지 제17호(인증정지, 취소 안내문)	105
별지 제18호(인증서 반납 신고서)	106
별지 제19호(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107
별지 제20호(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 주기 변경 신청서)	108
별지 제21호(단체표준인증 공장 관리 기록부)	109
별지 제22호(공장 이전심사 신청서)	110
별지 제23호(지위승계신고서)	111
별지 제24호(제조중단 신고서)	113
별지 제25호(생산개시 신고서)	114
별지 제26호(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신청서) ·	115
별지 제27호(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대장)	116
별지 제28호(자체점검 점검표)	117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정 : 2010년 7월 7일
개정 : 2025년 12월 1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및 동 요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활동지원 추진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단체표준인증단체 관리지침」 제6조(사무국의 업무처리 절차 등),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정관 제22조(단체표준 및 품질인증)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단체표준의 제정·보급과 단체표준 인증업무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① 조합/협회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이하 “인증단체”라 한다)로서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KS Q ISO/IEC 17065 적합성평가 -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이하 “ISO/IEC 17065”라 한다)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③ 「산업표준화법」 및 관련 규정이 상충될 경우,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사무국 「단체표준인증단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ISO/IEC 17065의 순서로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S Q ISO/IEC 17000”(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1. “인증심사기준”이란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등

- 제품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제품 인증심사기준을 말한다.
2. “제품”이란 단체표준 인증 대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3. “인증신청”이란 단체표준이 제정되어 있고, 인증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신청서를 인증단체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증단체”란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요건에 적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인증심사”란 인증단체가 인증신청자에 대하여 인증대상 제품이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신규인증심사”, “사후심사” 등이 있다.
 6. “공인시험·검사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7. “확인심사”란 공장심사 심사결과 인증신청자(또는 인증받은 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인증단체가 현장(공장)에서 확인하는 심사를 말한다.
 9. “단체표준인증마크”란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말한다.
 10. “인증받은 자”란 인증단체와 인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인증단체로부터 인증대상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단체표준 등록

제4조(단체표준의 제정) ① 규칙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단체의 장은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체의 장이 단체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2.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형식을 따를 것. 다만, 외국의 단체표준단체와 표준 보급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단체표준안을 제5조에 따른

단체표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친 후 자체안으로 확정한다.

④ 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자체 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단체 홈페이지 공지, 공문 발송, 공청회 개최 등 사무국이 정한 단체표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외에 단체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요령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체표준(제정, 개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단체의 장에 요청할 수 있다.

1. 단체표준의 제·개정안
2. 단체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3. 참고문헌 및 자료

제5조(단체표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단체의 장은 규칙 제19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 등의 업무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의 적·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기타 단체의 장이 요청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해관계의 균형을 갖추어 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해 요령 제3조(단체표준심의회) 제4항 각 호를 참고하여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1. 관련 제조업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 시험·검사기관 또는 관련분야 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정부부처 또는 관련 단체에서 표준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
5.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표준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자

6. 관련분야의 석사·박사 학위소지자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
 7.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같이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④ 단체의 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단체표준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위원은 위원회 안건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를 인증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심의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한다.
- ⑦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단체의 직원으로 한다.
- ⑧ 심사위원회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단체표준의 등록신청) ① 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단체표준안을 확정하거나 단체표준을 확인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에 요령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체표준 등록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단체표준 제·개정 등록, 확인 또는 폐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사유

2. 자체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안
 3.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4.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별지 제3호] 서식)
 5. 단체표준안 타당성 조사표 (요령 [별지 제10호] 서식)
 6. 공청회 관련 자료(단,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 한함)
 7.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 기타 사무국이 요청하는 자료
- ② 단체표준은 1개 단체가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복수기관이 단체표준 공동제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체표준 공동제정 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최초로 단체표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단체는 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를 사무국에 확인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단체는 e나라표준인증(<http://standard.go.kr>)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이하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라 한다)에 회원 가입을 하고 단체표준 등록신청 권한을 받을 수 있다.

제8조(단체표준안의 보완) ① 사무국은 단체표준 제·개정 또는 확인 등록을 위해 단체의 장이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에게 서류의 보완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하거나 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보완을 요청받거나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단체의 장은 서류의 보완 또는 반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체표준 등록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단체표준안의 예고) ① 제7조에 따라 해당 단체의 장으로부터 단체표준 등록 요청을 받은 사무국은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다음 내용을 30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단체명
2. 단체표준명
3. 표준번호
4. 단체표준 제·개정안
5. 의견제출 기한
6.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에 준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단체표준안의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자
 2. 해당 단체표준안의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단체 또는 기관
 3. 동종 분야·업종의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기관
 4. KS 또는 KC 인증기관
 5. 표준개발협력기관
 6.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
 7. 기타 해당 단체표준안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제1항에 따른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접수한 자
- ③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예고 시 이해관계인과 단체표준 등록신청 단체간 의견이 달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요령 제4조의 분쟁협의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단체표준안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을 때에 그 내용을 종합하여 단체표준안 예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단체표준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사무국은 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한 결과 단체표준안의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다시 15일 이상 예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단체표준안의 재심사) ① 제9조 제4항에 따라 사무국으로부터 단체표준안 재심사를 요청받은 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재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체표준안 등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 재심사 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범위에서 등록신청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사무국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절차를 거친 단체표준안을 요령 제3조에 따른 단체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단체의 장에게 통지한다.

- ② 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등록'인 경우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을 위하여 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표준 원문 최종

본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보완 후 등록’인 경우 해당 단체는 60일 이내에 보완한 단체표준 원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보완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안에 대한 등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④ 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보완 후 재심의’인 경우 해당 단체는 90일 이내에 보완한 단체표준 원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보완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안에 대한 등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⑤ 심의회의 심의결과가 부결된 단체표준(안)은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단체표준이 확정된 경우 사무국은 표준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한국표준협회에 단체표준의 등록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⑦ 한국표준협회는 제6항에 따라 사무국이 요청하는 경우 확정된 단체표준을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단체표준 적합여부확인) ① 단체의 장은 제11조 제7항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단체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이때의 처리 절차는 단체표준 제정 절차에 준한다. 다만, 단체표준의 개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3년 이내라도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② 단체의 장은 적부가 확인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개정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를 통하여 단체표준 확인 공문, 요령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체표준 등록신청서」, 심사위원회 결과자료, 적합여부확인 목록 등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무국은 단체의 장이 제1항의 적합여부확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회의 폐지 의결 후 한국표준협회에 해당 단체표준의 등록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기간은 제9조 제1항을 준용한다.
- ④ 단체의 장이 단체표준 폐지요청 공문, 요령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체

표준 등록신청서」, 폐지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단체표준의 폐지신청을 하는 경우에 사무국은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한국표준협회에 해당 단체표준의 등록취소를 요청한다.

제3장 단체표준 인증

제1절 인증단체의 일반사항

제13조(인증단체의 법적책임 등) ① 인증단체는 정관에서 규정한 인증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인증업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단체는 인증신청자에게 단체표준인증을 제공함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인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인증단체는 인증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인증기업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증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단체의 공정성 관리) ① 인증단체의 장은 공정성 방침을 정하여 인증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인증단체는 인증단체와 동일 법인에 소속되는 관련 조직이 인증을 신청하는 조직에 자문 또는 내부심사를 제공하는 등 인증활동의 공정성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15조(비차별적 조건) ① 인증단체는 등록된 인증범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모든 신청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비차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단체는 인증 의뢰(신청)자의 규모 또는 특정 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이미 인증된 공급자의 수를 이유로 인증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기밀유지 및 정보공개) ① 인증단체는 인증활동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② 인증단체는 다음의 정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증절차, 인증 승인, 유지,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서식, 절차를 포함하는 인증분야에 대한 정보
2. 인증 수수료에 대한 일반 정보
3. 인증계약서 등 인증신청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
4. 불만 및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

제17조(인증단체 변경사항 등의 보고) 인증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사무국에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보고기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양수, 양도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
2.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
3. 소재지 변경
4. 인증업무규정 개정, 인증심사원 변경·추가 등록 등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5. 신규인증 실적, 정기심사 및 특별심사 등의 실적, 인증처분에 대한 실적 등

제2절 인증단체 조직

제18(인증단체의 조직구조) ①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활동의 공평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인증업무 전담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단체의 장은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품질 향상에 대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은 품질방침을 정하고 관련 인원이 이해하고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증단체의 장은 경영진, 인증업무 수행 인원과 모든 위원회의 직무, 책임과 권한을 정한 조직구조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인증업무 전담조직의 권한 계통 및 법인 내의 다른 부서와의 관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 인증단체의 장은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단체표준 인증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2. 단체표준 제품인증의 승인, 유지, 확장,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인증마크 사용 및 중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증품목(제품)별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의 최종 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증심사 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 해석에 관한 사항
 7. 인증요구사항의 개발
 8. 인증평가 결과의 검토 및 인증결정에 관한 사항
- ③ 인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해 요령 제3조(단체표준심의회) 제4항 각 호를 참고하여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1. 정부기관(당연직) 또는 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5. 인증대상 단체표준과 관련된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다만, 인증단체 내부 직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6. 인증단체 전무이사 또는 부회장
 7. 표준 또는 인증 분야 전문가로서 인증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 ④ 인증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위원과 별도의 자로 구성하고,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 ⑤ 인증단체의 장이 인증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인증단체의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 명단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0조(공평성위원회의 구성) ① 인증단체는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공평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인증단체 내에 단체표준공평성위원회(이하 “공평성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단, 공평성위원회는 제19조 인증위원회로

같음할 수 있다.

② 공평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인증시스템의 공평성에 대한 방침 및 원칙에 관한 사항
2. 공평성 보장방침의 작성 및 공표
3. 인증단체의 인증업무 조직 및 자원에 대한 사전 공평성 위험 분석·예방에 관한 사항
4. 인증업무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발생 시 그 위험의 제거 또는 최소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증 업무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

③ 공평성위원회는 제19조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해 요령 제3조(단체 표준심의회) 제4항 각 호를 참고하여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④ 인증을 받은 자는 공평성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⑤ 인증단체의 장이 공평성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 명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공평성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19조 인증위원회 및 제20조 공평성위원회(각 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인증단체는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은 각 위원회 안건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를 인증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인증단체의 장은 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단체의 직원을 간사로 둔다.
- ⑧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⑨ 위원회의 위원 중 인증을 받은 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22조(공평성 보장 메커니즘) ① 인증단체의 장은 [별표 2]와 같은 공평성 보장방침을 제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위원회는 특정 이해관계자의 지배가 없도록 이해관계자를 균형있게 참여시켜야 하며 제24조, 제25조, 제28조와 제29조에 해당하는 인원은 단일한 이해관계자로 간주된다.
- ④ 인증단체는 직원 및 인증업무와 관련된 자 등에 대해 [별표 3]을 참고하여 공평성 저해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인증단체의 장과 공평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보고를 받은 인증단체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위한 공평성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⑥ 공평성위원회는 제5항의 조치 등 공평성 저해 사항의 제거 방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를 인증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⑦ 인증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공평성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⑧ 공평성 보장방침은 인증단체가 소유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시험·검사 기관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제23조(시험원의 공평성 보장) ① 인증단체의 장은 시험·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의 공평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험원의 독립적 운영과 공정한 시험·검사 업무 보장을 위해 시험원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 시험원 운영의 분리(인사, 재정·회계 분리 등), 기타 시험원의 공평성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원의 인증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납부, 시설 임대료·장비 사용료 납부, 시험원과 인증단체의 R&D 활동 및 사업 공동 참여, 시험원의 표준 제·개정 또는 인증심사기준 개발 공동 작업 등은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② 인증단체의 장은 필요한 시험설비를 인증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인원이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내부 압력(예: 경영진의 압력, 비정상적인 시험일정 단축 등) 또는 외부 압력(예: 공평성에 위배되는 고객 불만, 성적서 변조 요구) 등으로부터 독립되도록 운영한다.

제3절 인증단체 자원

제24조(인증단체의 직원) ①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수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직원은 인증단체에 정기적으로 일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인증단체의 경영시스템 또는 절차 내에서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개별적인 계약 또는 공식적인 협약에 따라 일하는 인원을 포함한다.

② 인증단체의 직원은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대한 기술적 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인증제도 및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의 적격성[별표 4]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인증과정의 주요 기능별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2.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직원들의 역량보유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4. 직원의 업무 수행도와 관련된 기록 유지

④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의 적격성[별표 4], 훈련, 경력 및 경험에 관한 정보를 최신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⑤ 직원은 해당 법규 및 인증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심사원의 등록 등) ① 인증단체의 장은 영 제26조에 적합한 자를 인증심사원으로 인증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으로 인증단체에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단체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2. 증명사진 2매 (이미지 파일로 대체 가능)
3. 서약서[별지 제8호]

③ 제1항에 따라 인증단체가 인증심사원을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현황[별지 제9호]
2.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품질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증 등)
3. 제27조의 인증심사원 직무교육 수료증

④ 인증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인증심사원의 등록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26조(인증심사원 등록의 취소·정지) ① 인증단체는 등록된 인증심사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별표 11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그 인증심사원의 등록을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등록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가. 심사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하여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나. 심사대상 공장을 대상으로 심사와 무관한 영업활동을 한 경우
 - 다. 심사대상 공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 라. 심사대상 공장을 대상으로 심사 전에 단체표준인증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한 경우
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이 제 31조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25조 제1항의 인증심사원의 등록 및 제27조 인증심사원의 등록유지를

위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때

② 인증단체의 장은 공정한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이 인증업무규정 등 인증단체의 인증업무 관련 규정 전반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27조(인증심사원 등록 유지 및 적격성 검증) ① 인증단체의 장은 등록된 인증심사원에 대해 등록 유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을 1년에 7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한국표준협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업무 관련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
2. 기타 인증심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② 인증단체의 장은 등록된 인증심사원에 대해 3년에 1회 이상 심사수행 능력평가 등을 실시하여 적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이때 적합성 검증은 인증단체의 장이 지명한 인증심사원 또는 위촉한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제28조(제품검사원의 자격 운용 등) ① 인증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품검사원으로 확보해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검사를 제29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요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졸업자로 제품시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인증단체의 장은 제품검사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부정이나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품검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정확과 공정을 기해야 한다.
2. 판정결과 및 검사기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소속부서의 장 또는 상급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검사업무에 따른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④ 인증단체의 장은 제품검사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검사실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시험·검사업무 위탁) ① 인증단체의 장은 시험·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자격 부여, 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관리절차 [별표 6]를 갖추고 실행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인증단체의 장이 단체표준인증업무와 관련된 시험·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정받은 공인 시험·검사기관, 이 경우 위탁하는 시험·검사 항목이 공인기관의 인정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할 것. 단, 일부 시험·검사 항목만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험 설비를 보유할 것.

③ 인증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업무협력협약서」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검토 및 갱신하여 상시 유효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30조(기밀유지 및 이해관계 독립) 인증단체의 장은 소속 임직원 및 인증심사에 관한 계약·협약을 체결한 외부 인원 또는 외부 기관이 인증과 관련된 기밀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절 인증 신청 및 심사

제31조(제품의 인증) 인증단체의 장은 단체표준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이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32조(인증심사기준) ① 인증단체의 장은 단체표준인증을 위한 [별표 7]과 같은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인증심사기준은 인증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체표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심사기준을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인증 신청 접수 및 검토) ① 인증단체의 장은 단체표준 인증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단체표준인증신청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단체는 단체표준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2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도의 단체표준 인증신청 서식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인증단체의 장은 신청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신청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제품에 관한 정보, 공장에 관한 정보는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데 충분한지
2. 인증단체와 신청자간에 단체표준 또는 기타 문서에 대한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는 경우, 합의 등 해결이 되었는지
3. 신청한 제품이 인증품목에 해당되는지
4.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심사원 및 일정, 시험설비 등이 가용한지
5.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증단체의 역량을 갖추고 수행 여건이 적정한지

③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단체표준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1. 인증신청자에 대한 인증심사 결과 제40조 제8항에 따라 인증불가로 판정된 경우 3개월간
2. 제49조 제2항 또는 제60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간

④ 인증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검토자의 서명 등의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증활동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인증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제34조(신청의 철회 및 반려) 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는 공장심사 전에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인증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를 폐기하고 징수한 수수료의 1/2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인증단체의 장은 단체표준인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서류를 반려한다.

제35조(인증심사의 절차 등) ①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 신청 접수 건이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공장심사 평가 항목, 제품심사 결과) 및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등의 요구사항에 모두 적합한지를 심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인증단체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인증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가 적절

하다고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심사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심사원 명단 등이 포함된 인증심사계획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단체의 장은 제품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를 운영하여야 한다.

1.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단체의 인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심사

2.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심사

④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단체표준이 개정되거나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공지하고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공장심사) ① 공장심사는 인증심사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공장심사를 위하여 신청자의 품질시스템에 대한 관련 문서를 사전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장심사는 신청인의 제조공장에서 최근 3개월간의 기간에 공장 운영에 관한 기록이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공장심사 일수는 1개 품목은 1일, 2개 또는 3개 품목은 2일, 4개 품목 이상은 3일 이하로 한다. 다만, 1개 품목에 대한 신규 인증심사의 경우와 신청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에는 1개 품목을 2일 이하로 할 수 있고, 단체표준에 따른 주요 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일수를 최대 3일까지 연장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인증을 신청한 제품의 제조공장이 다수일 경우 모든 제조공장에 대해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⑤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를 완료한 때, 공장심사에서 발견된 보완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에 대한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신청자의 동의 서명을 받은 후 전체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정리하여 인증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공장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단체는 제품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증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공장심사의 보완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을 개선하여 공장심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에 실시될 제품심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37조(공장심사 일부면제 등) ① 제36조에 따른 공장심사에는 적합 또는 합격하였으나 제38조에 따른 제품심사는 부적합하여 인증 불가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제품(품목)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한 경우 인증단체의 장은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품심사에서 연속적으로 2회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는 공장심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ISO 9001 인증기업일 경우에는 공장심사 심사사항 중 품질경영은 생략(적합 “예”로 평가)하고 심사한다. 다만, 생략 받고자 하는 인증기업은 ISO 인증서, 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 ISO 인증기업이 갖추어야 할 주요 문서화된 정보를 인증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KS 인증기업일 경우에는 공장심사 심사사항 중 품질경영은 생략(적합 “예”로 평가)하고 심사한다. 다만, 생략 받고자 하는 인증기업은 KS 인증서, 최근 사후관리심사 결과, 품질관리담당자 지정현황,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현황 등 KS 인증기업이 갖추어야 할 주요 문서화된 정보를 인증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KOLAS 공인기관(제품인증분야)의 인증기업일 경우에는 공장심사 심사사항 중 품질경영은 생략(적합 “예”로 평가)하고 심사한다. 다만, 생략 받고자 하는 인증기업은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의 인증서, 최근 사후관리심사 결과, 품질관리담당자 지정현황,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현황 등 KOLAS 인증기업이 갖추어야 할 주요 문서화된 정보를 인증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생략한 때에는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료 채취 시 품질관리담당자의 지정, 제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제품심사) ① 제품심사는 인증심사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사후관리의 경우 인증심사원 1인 이상으로 심사반 구성이 가능하다.

② 제품심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시료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품 제조공장에서 심사당일 제품재고 또는 생산중인 제품 중에서 채취한다.

③ 인증심사원은 채취한 시료를 봉인한 후 시험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시료를 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품 제조 공장 현장에서 시험을 할 수 있다.

1.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필요할 때
 2. 시료가 무거운 물건이거나 시료의 운반이 곤란할 때
 3. 시료의 이동이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시험을 실시할 경우
 4. 공장이 외국에 있는 경우로서 현지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5. 국내에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장비를 갖춘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 ④ 인증심사원은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에 따라 제품의 인증 구분(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별로 채취한다. 다만, 공장심사에서 보완사항 발생 시 인증심사원의 판단에 따라 시료 채취를 보류할 수 있다.
- ⑤ 인증단체가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공인시험·검사기관은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작성하고 인증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⑥ 인증단체가 자체적으로 제품심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단체의 장은 제품검사원 자격에 합당한 자로 하여금 시험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⑦ 인증단체는 제품심사가 완료되면 시험성적서 등 제품 시험결과를 인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제품 품질시험 일부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증 신청자가 인증대상 공장에서 생산한 시료로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항목의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험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항목의 경우
2. 인증심사 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 단체표준 요구수준 이상의 경우
3. 제품에 사용된 재료가 동일한 경우

제40조(제품인증의 심사결과 검토 및 처리) ①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및 제품시험결과에 대해 인증단체의 검토를 위하여 인증단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인증단체의 장은 심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 및 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최소 1명의 인원을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공장심사 결과 “일반품질” 평가항목에 대한 보완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이 발생된 경우 인증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 내에 부적합개선 조치 보고서 등의 서류를 인증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 결과 보완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의 개선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장심사보고서와 함께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일반품질 평가항목의 경우라 하더라도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에 따른 개선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보완사항 발생 시 : 1개월 이내
 2. 부적합 발생 시 : 45일 이내(공휴일 제외)
- ④ 공장심사 결과 “핵심품질” 평가항목에 대한 보완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인증단체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심사를 하여야 하며, 개선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부적합 개선 조치 보고서를 공장심사보고서와 함께 인증위원회에 제출하고,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인증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공장심사를 다시 실시한다.
- ⑤ 인증단체는 공장심사가 적합으로 판단된 경우에 제품심사를 실시하며, 제품심사 결과인 시험성적서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 ⑥ 인증단체는 공장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인증신청자가 보완사항 또는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을 완료할 때까지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야 하며, 부적합 평가항목이 개선될 경우 공장심사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한다.
- ⑦ 인증신청자가 제3항 각 호의 기간 내에 보완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인증단체는 해당 인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증신청자는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 ⑧ 인증단체의 장은 제품심사 결과,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41조에 따라 의결한 인증불가 결정을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인증신청자는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 ⑨ 인증단체의 장으로부터 인증불가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최소 3개월 이내에 재신청이 불가하다.

제5절 인증 결정 및 인증서 발급

제41조(인증의 결정 및 인증계약의 체결) ① 인증단체의 장은 공장심사보고서, 제품심사 결과 및 부적합 개선조치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인증의 결정은 [별표 9]의 심사결과 판정기준을 바탕으로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인증심사 절차(계획, 심사, 결과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은 [별표 4]에 적합한 직원을 지정하여 인증의 유지 결정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유지 결정은 [별표 9]의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른다.

③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의 결정에 대하여 인증신청자에게 문서, 전자매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증단체의 장은 단체표준인증을 결정한 경우 인증신청자와 단체표준인증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별지 제14호]의 인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인증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 적어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의 인증업무에 관한 계약임을 명시
2. 단체표준 인증품목 정보(표준번호, 표준명, 종류·등급·호칭·모델)
3. 인증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4. 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표시사항에 관한 사항
5. 인증받은 자의 인증제품 광고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증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사항
6. 인증단체의 장이 인증받은 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인증받은 공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심사할 수 있다는 사항
7.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 제3자로부터 불만을 받은 경우의 이의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인증단체의 장 및 인증받은 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9. 인증단체의 장이 취할 조치에 대해 인증받은 자가 행하는 청문(인증받은 자의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10. 인증 취소, 인증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11.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12. 심사주기 준수, 수수료 납부 등 인증단체가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 업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 ⑥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계약이 종료되면 인증받은 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한 일반인이 인증종료(취소 포함) 내용에 대해 열람 가능하도록 인터넷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인증 계약의 종료일 및 인증 번호
 2. 종료한 인증 계약에 관한 인증받은 자의 공장명 및 소재지
 3. 제품인증서의 발급 시 기재사항
 4. 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표시사항

제42조(인증의 추가 또는 변경) ① 인증받은 자가 인증품목을 추가할 목적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인증단체의 장은 제36조 내지 제40조에 따라 인증 심사를 실시하고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받은 자가 이미 인증 받은 품목의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등 인증의 범위를 추가할 목적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인증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제36조 내지 제40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해당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에 관한 것에 한한다.) 하고, 그 결과를 인증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 시 심사사항의 일부(품질경영,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의 평가를 생략(적합 “예”로 평가) 한다.

④ 인증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 추가에 대하여 단체표준인증을 결정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의 종류·등급·호칭·모델 추가에 대하여 단체표준인증을 결정한 경우 제41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증계약을 변경하고 제43조에 따라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품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생산을 위한 주요 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증받은 자는 제품(품목)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사항을 기록한 자재관리 목록을 인증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증받은 자는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을 인증단체에 심사 전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자재의 변경으로 인해 제품의 성능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에는 인증단체의 장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받은 자에게 시험성적서 제출, 제품시험 실시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인증받은 자가 주요 자재관리 목록의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한 경우, 인증단체의 장은 해당 제품(품목)이 단체표준에 현저히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43조(인증서의 발급) ①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신청자와 인증계약 체결에 의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단체표준인증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http://sps.kbiz.or.kr>)을 통해 위변조 방지가 가능한 인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인증단체의 장은 제품이 단체표준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하여 인증 신청자와 인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 공장 소재지, 인증제품의 표준명 및 표준번호, 단체표준인증에 관계되는 근거조항, 인증단체명, 인증일, 사후관리 심사 기한, 인증계약의 유효기간, 인증 제품의 종류·등급·호칭·모델 등을 기재한 단체표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4조(인증서의 반납) ① 단체표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인증서 반납 신고서」를 인증단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이 폐지된 경우
2.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인증받은자가 자발적으로 인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5. 인증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② 인증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수리하고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인증서 재발급) 인증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인증계약의 변경이 없는 인증서의 단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단체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며,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6조(인증서 변경 발급) ①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 품목 또는 범위(종류·등급·호칭 등)의 추가·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인증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받은 자는 연합회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항상 최신화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별표8]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연합회로 제출해야 한다.

제6절 사후관리 등

제47조(사후관리) ① 인증단체의 장은 제품 인증의 사후관리로서 인증표시 제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장심사는 매 4년 마다 실시하고, 제품심사는 매 2년 마다 실시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에 인증분야, 품질수준, 소비자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별지 제21호] 서식의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 주기 변경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 단체표준심의회회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 심사주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 주기 축소 사유에 대해 인증단체의 업무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인증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사일수 축소 및 실시 시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인증단체의 업무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 이전 KS, KC 인증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증심사에서 동일한 심사항목에 대해 심사를 받은 경우

2. 인증기업이 동일 인증단체의 인증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유사한 항목을 연속적으로 공장심사 (반기별, 분기별 등)를 받을 경우

⑤ 인증받은 자의 공장이 부도, 폐업, 기타 사유로 공장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인증단체의 장은 서면조사로 사후심사를 갈음하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를 실시할 경우에 인증심사원은 사후심사일 기준으

로 최근 1년 이상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을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사후관리로서의 공장심사와 제품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사후관리 대상 통보와 신청) ① 인증단체의 장은 당해 연도 초에 사후관리 대상자를 인증단체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를 해당 대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받은 자가 사후관리를 받으려면 인증서에 기재된 사후심사 기한 2개월 이전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단체표준인증 신청서」에 따라 사후관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단체의 장은 사후관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사일정 및 심사원을 통보해야 한다.

④ 인증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별지 제21호] 서식의 「단체표준인증 공장 관리기록부」에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제49조(사후관리 실시결과 등) ① 인증단체의 장은 사후관리 실시결과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41조에 따라 인증 유지의 결정을 하고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받은 자가 제47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 시판품조사 또는 특별현장조사 결과 판정기준에 부적합일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라 단체표준인증 부적합 처분 및 단체표준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인증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적합 사항 개선권고 조치에 따른 부적합개선조치보고서 제출기간은 제4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내로 하되, 시험기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하여 인증단체의 처분 이전에 자진 반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증단체의 장은 제2항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권고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결과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로서 확인하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인증

심사원 출장비 및 수당지급기준 [별표 12]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결과 적합으로 판명된 경우 인증단체의 장은 처분기간 만료일에 처분을 해제하며, 부적합으로 판명된 경우는 제41조의 의결에 따라 지체 없이 인증을 취소한다.
- ⑥ 인증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에 대한 표시정지 등 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다음 사항을 처리하고 통지하기 위한 최소 1명의 인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1. 인증을 취소시키거나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조치
 - 2. 인증업무규정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기타 다른 조치

제50조(공장이전심사) ① 인증받은 자는 인증제품 또는 서비스의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인증단체로 [별지 제22호] 서식의 「공장이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단체의 장은 그 공장의 이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의 설비·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당해 공장에 관한 것에 한함)하고, 그 결과를 인증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심사 심사사항 중 공정·제조설비관리, 제품관리에 관한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장이전심사에서의 심사 실시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인증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이전심사로 단체표준인증을 결정한 경우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증계약을 변경하고 제43조에 따라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인증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공장이전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 제4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의 사후관리 심사는 이전심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47조의 사후관리 주기를 따른다.

제51조(시판품조사 및 특별현장조사) ① 인증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판품조사 또는 특별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불량 인증 제품신고가 접수된 경우
- 2. 정부·소비자단체 등에서 품질개선 요구가 있거나, 인증 제품 또는 인증 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의 확인·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 4. 인증제품의 제조의 중단 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인증받은 공장이 부도, 폐업 등으로 인증 제품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제49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등의 처분에 대한 이행 확인이 필요한 경우
- 6. 기타 단체표준 인증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하여 단체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판품조사 및 특별현장조사는 제36조, 제38조를 준용한다.

③ 시판품조사 및 특별현장조사 결과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단체의 장은 제49조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① 인증받은 자가 공장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장을 양수받은 자,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 되는 법인은 그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인증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단체표준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3조(보고 등) 인증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4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다만, 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

- 우에만 해당되며, 중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인증제품 제조공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4. 제49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등의 처분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
- 5. 제품인증의 경우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변경사항 (보고 후 인증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54조(제3자의 이의신청) ① 인증제품에 대하여 소비자 등 제3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인증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업체명 및 전화번호
 - 2. 인증제품의 명칭,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 3. 인증제품의 공장소재지
 - 4. 인증제품의 구입 장소, 판매인의 성명(판매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 5. 이의신청의 사유
- ② 인증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인증 제품이 해당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인증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인증 제품을 교환·수리·환불 또는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인증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검토 결과 인증 제품이 해당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1조에 따른 시판품 조사 또는 특별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의 개정 조치) ① 인증제품의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에 인증받은 자는 개정된 단체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제품의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즉시 공지하고 인증받은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 자는 개정된 단체표준 등록일 또는 개정된 인증심사기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 및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준번호, 표준명,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등이 변경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개정된 단체표준에 따라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성능·시험방법 등이 개정된 경우)
3.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검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
4. 단체표준 표시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인쇄물 또는 사진 등(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5. 개정된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품·서비스를 생산·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인증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가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의 검토 결과, 개정된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문서의 비치·보존) ① 인증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제품인증의 경우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 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② 인증단체의 장은 단체표준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각 호의 관계서류에 대한 보존 기간은 최소 4년으로 한다.

1. 단체표준인증 신청시 제출받은 서류
2. 제품인증의 경우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에 관한 서류

3. 인증위원회 심의 서류
4. 사후관리에 관한 서류
5. 인증업체 현황 및 인증범위와 인증일자
6. 기타 단체표준인증에 관한 서류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문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57조(인증수수료 등) ① 동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2]에서 정한 수수료 및 비용을 해당 인증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인증단체의 장은 제60조에 의거하여 인증취소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잔여기간분의 인증수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7절 인증표시와 인증취소

제58조(단체표준 인증표시) ① 인증받은 자가 인증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계약서·납품서·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

1.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2. 단체표준 인증단체명
3. 단체표준 인증번호
4.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제조일
5.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제조자명
6. [별표 13]의 제도법을 따라 제작된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7. 1~6호 외에 해당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② 인증을 받은 자는 그 공장의 사무실에는 발급받은 인증서를 그 공장의 정문에는 표시판을 각각 게시할 수 있다.

③ 인증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 또는 계약서·납품서·홍보물에 당해 제품이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증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제공하거나 진열, 보관 또는 운반한 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59조(허위표시) 인증단체의 장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10]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1.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2. 인증받은 자가 자체 제품을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인증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 자체에 또는 그 제품의 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4. 인증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의 광고에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고 오해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제60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47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지 아니한 때
 3. 사후관리 또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결과 인증 제품이 단체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부도, 폐업 등으로 인증제품 생산 납품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6. 제59조에 따른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때
 7. 인증 제품이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제49조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표시정지, 재심사·재시험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인증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인증받은 자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 인증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인증위원회 심의에 따라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③ 인증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④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 취소시 인증받은 자에게 해당 취소된 인증제품에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표시를 제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제61조(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 신청)** ① 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이하 “우수인증단체”라 한다) 인정서를 받은 우수인증단체는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우수인증단체로부터 단체표준인증을 받고 해당 인증제품의 3개월 이상의 생산실적이 있는 자는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우수인증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우수인증단체의 장은 제3항의 신청인이 제조한 제품이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에 적합한 경우에 규칙 제18조 제2항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44조 내지 제46조, 제52조의 규정은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반납, 재발행·변경 발행 및 지위승계에 준용한다.
- ⑥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발급내용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하여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대장」에 인증업체별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⑦ 제1항 내지 제6항은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신청에 준용한다.

- 제62조(확인서의 유효기간)** ①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제49조 제2항 또는 제60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 제63조(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 절차)** ① 우수인증단체의 장은 제61조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확인서 발급신청자가 제조하는 제품이 규칙 제18조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한다.
- ② 우수인증단체의 장은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신청자가 제조하는 제품이 규칙 제18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제품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제품심사의 절차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절 인증단체 경영시스템

제64조(경영시스템 구축 및 유지) ①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단체의 요건 및 ISO/IEC 17065의 요구사항의 지속적인 충족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인정기구로부터 KOLAS 인정을 받거나 KS Q ISO 9001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충족된 것으로 한다.

② 인증단체의 장은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보조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한 단체표준별 품질문서를 작성·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품질문서라 함은 KS Q ISO/IEC 17065 요구조건에 따라 작성된 품질문서 등을 말한다.

제65조(경영검토) 인증단체의 장은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대해 공식적으로 표명한 방침 및 목표를 포함하여 인증업무 전반에 대한 적합성, 효과성 및 유효성의 보장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영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경영검토 운영에 대한 세부 절차는 [별표 12]에 따른다.

제66조(내부심사) ① 인증단체의 장은 단체표준 인증업무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령 제17조에 따라 내부심사 운영 절차[별표 15]를 규정하고 연 1회 이상 내부심사(자체점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내부심사는 인증, 심사 및 경영시스템에 대한 식견이 있는 자에 의해 [별지 제28호] 서식의 「자체점검 점검표」를 활용하여 수행하며,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심사하여서는 안된다.

제67조(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①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단체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부적합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별표 16]에 따라 부적합의 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제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인증단체의 장은 잠재적인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별표 16]에 따라 잠재적 부적합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등

제68조(표준화활동 촉진) 인증단체의 장은 단체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단체표준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단체표준의 전환) ① 인증단체의 장은 KS가 특정산업 분야에 국한되어 사용되거나 KS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KS가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거나 통합되는 경우에는 KS 인증제품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인증받은 자는 전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70조(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①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술사·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2. 영 제30조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② 품질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자는 3년마다 표준화교육전문기관 또는 인증단체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담당자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1조(단체표준화 교육) ①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 인증받은 자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연합회 등에서 실시하는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는 [별표 17]와 같이 정하며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간부교육(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교육)

2. 품질관리담당자 정기교육

제72조(위원회 위원 및 인증심사원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 ① 심사위원회, 인증위원회 및 공평성위원회 위원의 여비는 [별표 12] 1. 위원회 위원의 여비 규정에 의한다.

② 인증심사원의 심사수당 및 출장비는 [별표 12] 2. 수수료 및 비용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2025.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제1호 나.항의 개정 시행일에 따라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 이외의 인증업무 관련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및 하위법령을 따른다.

품 질 방 침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운영하는 인증기관으로서 인증 관련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의 품질방침을 정한다.

품 질 방 침

공명정대한 인증업무 수행

- ▶ 이를 위해 연합회는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증업무를 통한 “고객 불만 0 %”를 품질목표로 한다.
- ▶ 본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는 단체표준인증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이 이해하고 충실히 실행하며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 ▶ 연합회장은 상기와 같은 품질방침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의 지원을 보장하고,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책임자로서 인증책임자(전무이사)를 지명하며,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다.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공평성 보장 방침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모든 직원은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KS Q ISO/IEC 17065 및 산업표준화법령의 요구사항에 따른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해 상충을 관리한다. 인증활동에서 항상 공평성과 관련한 방침과 원칙을 중시하고, 인증은 정확(正確)하게, 생활은 정직(正直)하게, 업무는 정도(正道)를 실천하고, 인증업무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공평성 보장에 관한 방침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인증활동에 관련된 모든 인원은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인증단체의 공평성에 대한 내외부적 모든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리스크를 제거 또는 최소화한 조치를 실행한다.
3. 단체표준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관련부서 및 제품인증을 위탁하는 내부 및 외부조직은 다음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 인증제품의 설계자, 제조자, 설치자, 분배자 또는 관리자
 - 인증서비스의 설계자, 시행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
 - 의뢰자에게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육
 - 의뢰자에게 경영시스템 자문이나 내부심사를 제공
 - 단체표준 인증 신청 제한, 부당한 압력/권한/행사 요구 등
 - 이해상충 시 인증심사 배제
4. 단체표준 인증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조직이 인증활동의 공평성을 상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5. 단체표준 인증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조직이 인증된/인증될 제품을 제공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또는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육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외부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그 외부조직의 인원은 제품인증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6.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육을 제공하는 특정 조직의 활동과 연계하여 고객에게 마케팅 또는 제안을 하지 않으며, 이해상충 시 인증심사를 배제하고 단체표준 인증 신청제한을 금지한다.
7. 인증활동의 공평성을 보장하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을 배제한다.

20 년 월 일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 ○ (서명)

[별표 3]

공평성 관리 절차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공평성 관리는 공평성 관련 정보 조사, 공평성 리스크 평가, 조치방안 수립 및 실행, 조치결과 검토 등의 절차로 수행하여야 한다.

수행 단계	세부 절차 및 기준
1. 공평성 관련 현황 파악	1) 공평성 관련 상황 파악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공평성 내부 및 외부 상황을 파악한다. 공평성과 관련된 내부 및 외부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협회 내 다른 조직에서 제공하는 사업, 서비스, 자문상황 ② 위탁업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업, 서비스 상황, 자문 상황 2) 공평성 관련 이해관계자 파악 및 분석 모든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공평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해관계자의 예: 인증신청조직, 인증받은 조직, 인증업무관련 직원, 내부직원, 인증심사원, 위원회의 위원, 위탁기관 등)
2. 공평성 리스크 분석 및 평가	1) 리스크 요인 파악 ① 지속적으로 리스크요인을 파악하며, 년 1회 리스크를 분석한다. 다만, 내·외부기관에 변경사항 발생으로 필요하면 추가로 실시한다. ②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즉 공평성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을 파악한다. 이슈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 신청 기업의 특정인의 심사 참여 또는 배제 요구 나. 조속한 인증서 발급 요구 다. 심사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업에 대한 심사 라. 다른 부서에서 자문을 제공한 기업에 대한 심사 마. 외부/위촉심사원의 경우, 자신이 자문을 제공한 기업에 대한 심사 ③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부속 1] 리스크 요인 구분을 참조한다. 2) 리스크 분석 시행 및 수준 평가 인증업무의 비밀유지, 객관성 및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리스크를 분석하고, [부속 2]의 리스크 수준평가 방법에 따라 리스크 수준을 평가한다.
3. 리스크 분석 결과 및 조치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리스크 요인을 제거 및 방지하기 위하여 [부속 3]에 따른 조치방안을 수립한다
4. 리스크 모니터링 및 결과 검토	1) 모든 인원에 대해 년 1회 이상 사안 발생 시 공평성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평성 문제점 발견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2) 공평성 보장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평성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부속 1】 공평성 리스크 요인 구분

공평성 리스크의 요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리스크 요인 구분	리스크 내용	
자체이해관계 (A형)	A-1	인증직원 개인 또는 기관의 이익추구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
	A-2	인증업무와 연관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는 방식의 마케팅 활동
	A-3	인증과 관련한 금전적 이익 추구
	A-4	서비스 또는 수수료 계약에 대한 과도한 의존
	A-5	신청자를 잃는다는 두려움
	A-6	실직에 대한 두려움
자체검토 (B형)	B-1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제품에 대하여 시험/평가를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
	B-2	인증제품의 공급 또는 설계 관여
	B-3	인증 불가능 요소를 감소시키는 충고나 컨설팅 서비스제공
옹호 (C형)	C-1	인증기관 또는 인증직원이 신청자인 특정 회사를 지지하는 행동 또는 대립하는 행동
	C-2	외부시험기관(제조사 시험소 포함)에 의해 수행된 시험에 대한 과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
과잉친절 (D형)	D-1	개인 및 기관의 친밀도 또는 지나친 신뢰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D-2	내부 및 외부 관련 기관의 직원, 소유자, 임원진, 이권소유자와의 관계
	D-3	인증직원의 이전 소속 및 업무경력, 각종 단체 참여 및 활동내용
	D-4	외부시험기관(제조사 시험소 포함)의 시험설비의 교정 및 관리상태를 시의 적절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리스크
협박(E형)	E-1	개인 및 기관에 미치는 신청자의 부적절한 강요 또는 협박에 따른 리스크
	E-2	인증기관 내부 부서 또는 그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에 의한 부탁이나 강요
경쟁(F형)	F-1	신청자와 계약된 자 간의 경쟁
인증기관의 공평성보장저해 (G형)	G-1	재량권 남용 : 인증기관이 인증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시행하는데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인증신청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반독점 문제를 유발하는 인증활동
	G-2	의무 위반 (과실) :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리스크 - 과실 책임 (불법 행위 책임의 한 형태)
	G-3	적법 절차의 위반 : 인증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규칙 및 절차를 제정하는데 객관성 및 엄격성 부족

【부속 2】 리스크 수준 평가 방법

리스크 수준 평가(risk evaluation)는 수집·정리된 각 리스크 요인에 대해 위험성을 산정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일련의 절차이며, 다음의 단계별 과정을 가진다.

1. 심각도(리스크 강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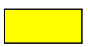

빈도	수준	판정기준 설명
3	높음	- 법적 분쟁 발생
2	중간	- 신청자 불만 발생
1	낮음	- 신청자 이의제기

2. 발생빈도 수준

수준	발생빈도	판정기준
3	높음	- 3개월에 1회 발생 예상
2	높음	- 6개월에 1회 발생 예상
1	낮음	- 1년에 1회 발생 예상

3. 리스크 수준 추정(Matrix)

구분		강도		
		높음 (3)	중간 (2)	낮음 (1)
빈도	높음 (3)	높음 (9)	높음 (6)	중간 (3)
	중간 (2)	높음 (6)	중간 (4)	낮음 (2)
	낮음 (1)	중간 (3)	낮음 (2)	낮음 (1)

 : 높은 리스크,  : 중간 리스크,  : 낮은 리스크

4. 리스크 수준 평가 방법

- 1) 리스크 수준 추정은 인증업무에 미치는 리스크의 심각도(강도) 및 발생 빈도를 다음과 같이 정량화하여 추정한다. 리스크 발생빈도와 리스크 강도의 정량화된 리스크 순위를 곱한 값이 각 리스크 요인에 대한 리스크 수준이 되며, 리스크 수준이 1 부터 2 까지는 낮은 리스크, 3 부터 5 까지는 중간 리스크, 6 이상은 높은 리스크로 평가한다.
- 2) 리스크 수준 평가에서 리스크 수준 분석 대상의 리스크 수준 합의 평균, 즉 종합평균이 1.0 이상 2.5 이하이면 낮은 리스크군(Blue class), 2.6 이상 5.5 이하이면 중간 리스크군 (Yellow class), 5.6 이상 9.0 이하이면 높은 리스크군(Red class)으로 분류한다.

【부속 3】 리스크 제거/방지 조치방안

1. 리스크 분석 결과 조치 방향

구분	리스크군 구분	리스크 수준	조치 방향
인증직원 (개인)	높은 리스크군(Red class)	5.6 이상 9.0 이하	1개월 이내 처리 (우선처리)
	중간 리스크군(Yellow class)	2.6 이상 5.5 이하	2개월 이내 처리
	낮은 리스크군(Blue class)	1.0 이상 2.5 이하	3개월 이내 처리
인증기관 (조직)	높은 리스크군(Red class)	5.6 이상 9.0 이하	1개월 이내 처리 (우선처리)
	중간 리스크군(Yellow class)	2.6 이상 5.5 이하	2개월 이내 처리
	낮은 리스크군(Blue class)	1.0 이상 2.5 이하	3개월 이내 처리

2. 리스크 제거/방지 조치방안

리스크 제거 및 방지 조치방안	
리스크 요인	리스크 완화 전략 및 설명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인증 활동의 리스크에 따라 책임보험료를 결정함 인증과 관련한 모든 인원의 교육 (교육은 부패방지 기준과 절차를 위한 기본 도구임) 리스크 분석의 주기적인 갱신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크 요소를 감소시키는 외부 전문가 활동에 대한 관리시스템 운영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이행에 대한 징계 제재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자에 의한 감독 및 내부심사를 통해 사회 활동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요소를 제거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활동과 주기적 리스크 기반 감사를 포함하여 사후 승인 보증 프로그램 구현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client)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 사이의 서약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크 분석의 주기적인 갱신 해당 업무와 관련한 모든 인원의 교육 (교육은 부패방지 기준과 절차를 위한 기본 도구임) 책임보험 가입 신청자(client)와 기관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정립

인증단체 직원의 적격성 요건

1. 인증단체 직원의 적격성 요건

인증단체 직원의 적격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인증단체 직원의 적격성 요건 >

적격성 요건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KS 인증심사원보 이상■ 단체표준 인증시스템에 대한 이해■ 단체표준 인증 관련 법규 및 사무국 지침에 대한 이해■ ISO/IEC 17065 요구사항 이해	관련 증빙서류 및 교육기록 등의 유지

(주) 인증 유지의 결정을 인증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인증단체장이 지정하는 인원(예:인증책임자)이 수행하는 경우, 해당 인원은 KS인증심사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함

인증심사원의 등록 취소 · 정지의 기준

위반행위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1) 심사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하여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심사대상 공장을 대상으로 심사와 무관한 영업활동을 한 경우 3) 심사대상 공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심사대상 공장을 대상으로 심사 전에 단체표준인증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한 경우	등록정지 3개월 등록정지 3개월 등록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이 제31조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록취소
4. 제25조 제1항의 인증심사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5.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때 1) 2회 사용 또는 대여한 경우 2) 1회 사용 또는 대여한 경우 3) 인증심사원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록취소 등록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제27조 제1항의 인증심사원 직무교육을 1년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록정지 (기간 :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해의 다음해 1.1부터 그 해 직무교육 이수시까지)

* 등록정지 : 등록정지 기간동안 인증심사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위탁기관 관리 절차

제품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위탁업무기관을 활용하는 경우, 위탁업무기관의 업무수행이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요구사항에 부합됨을 보장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로 관리하여야 한다.

수행 단계	세부 절차 및 기준
1. 위탁기관 조사 및 검토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으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한 위탁업무기관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시험실,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확보내역서 2) 인증대상 제품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인증대상 제품의 시험·검사항목이 KOLAS공인기관의 인정범위에 포함될 것) 3) 인증대상 제품의 성능평가지험 업무수행 계획서(측정·분석수수료, 측정·분석 업무 수행절차방법,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위탁기관 평가	1) 위탁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선정하여 평가팀을 구성하고, 위탁기관의 조건에 충족되는지를 평가한다. 2) 평가인원은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배제시킨다.
3. 평가결과 검토 및 계약	1) 위탁기관 평가결과에 대해 인증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인증단체의 장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다. 2) 위탁업무기관과 위탁업무계약서와 필요한 부속서류에 의해 위탁업무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4. 위탁기관의 관리	1) 위탁업무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시험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다만 해당 기관이 KOLAS 인정기구 등 공인기관에 의한 정기평가가 수행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① 적합한 조직 및 인력의 유지 상태 ② KS Q ISO/IEC 17025의 요구사항에 의한 관리 상태 ③ 기존 시험결과 등의 유지 관리상태 ④ 시험실 및 시험기기 등의 관리상태 ⑤ 기타 위탁업무기관의 운영상태 2) 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계약을 갱신한다. 3)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탁업무기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시험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② 인증대상 제품성능 평가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③ 시험성적서 작성 및 발급과정 등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 ④ 기타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4) 다음과 같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업무수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지정 당시 제출한 기술인력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때 ② 시험업무에 사용된 시설·장비가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

해당표준번호	SPS-KCIC0001-0703
--------	-------------------

해당표준명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
-------	-----------------

제정연월일	2000년 10월 31일
-------	---------------

개정연월일	2024년 08월 02일
-------	---------------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1. 품질경영관리

심 사 사 항	구 비 요 건
<p>1. 표준화 및 품질 경영의 추진</p>	<p>○경영책임자가 표준화와 품질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경영방침을 정하고 사내규격 및 관리규정을 정하는 등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야 한다.</p> <p>○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적절하고 해당 단체표준 규격 및 개별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사내표준의 구비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 일반에 관한 규정 - 자재 관계 규정 - 공정 관계 규정 - 제품의 품질 규정 -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규정 - 소비자 불만 처리에 관한 규정
<p>2. 사내표준화와 품질 경영의도입 확산 및 조직의 운영</p>	<p>○ 품질경영을 위한 행사 개최 및 분임조 조직운영 등 표준화와 품질경영 도입 확산에 노력하고 있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p>

2. 자재관리

심사명 주요자재명	구 비 요 건			
	검사항목	자재품질기준	검사방법	이행사항
표준에서 정한 주요 자재를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자재의 품질기준은 생산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자재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내표준에 의하여 자재를 인수할 때의 품질검사(이하 표에서 '인수검사' 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하고, 자재를 관리하는 자가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1. 시멘트	1) 비중 2) 응결시간 3) 분말도 4) 안정도 5) 강도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및 KS L 5401(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 품질 이어야 한다.	○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제조공장의 시험성적서를 월1회 이상 확인하고 있거나 또는 자체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비고 : 시멘트 창고 또는 시멘트 사일로는 방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골재		○ 골재의 품질기준은 생산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 골재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규정해야 한다.	○ 종류별, 크기별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 두 가지 이상의 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하는 골재의 종류, 혼합비율, 혼합방법을 명시하고 혼합된 골재의 품질을 시험하고 있어야 한다. ○ 골재원이 변동될 때 또는 품질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심사명 주요자재명	구 비 요 건			
	검사항목	자재 품질기준	검사방법	이행사항
3. 철근	1) 지름 2) 길이 3) 인장강도	○KS D 3504 및 KS D 7017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품질이어야 한다.	○입하시 마다 제조처 성적서를 확인하고 있거나,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칭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위에 지붕을 설치하든지 덮개등을 하여 직접 지상에 노출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물	○ KS F 4009의 '물' 기준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 KS F 4009의 '물' 기준에 따른다.	○ 콘크리트 및 철근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함유량이 한도 이내인지를 확인할 것 ○연 1회 이상 수질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회수수에 대하여는 품질의 변동 및 배합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주기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5. 혼화재료	품목, 종류 및 성분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제),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KS L5405 (플라이애시)에 적합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일 것.	○품목, 종류 및 성분은 시험성적서에 따라서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제조업체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거나 외부의뢰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확인한다.	○변질 및 오염 등에 따라서 콘크리트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6. 착색용 재료 (사용할 경우에 한함)	1) 겉모양 2) 색상 3) 성분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제조공장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거나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자체시험은 외부시험을 의뢰하여도 좋다
---------------------------	--------------------------	--	--

- 비 고
1. 3개월 이상 저장된 시멘트는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인증제품은 인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자체시험 대상 자재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에 시험의뢰하여 항목별품질 수준이 확인 될 경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산지 등 조건 변경시는 1년 이내라도 품질수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부품을 자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공정관리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5.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3. 공정 · 제조설비관리

심사사항 주요공정명	구 비 요 건			
	검사또는 관리항목	검사 또는 공정관리방법	이 행 사 항	제조작업표준
1. 골재의 전처리	(관리항목) 1. 입도 2. 표면수량 또는 함수율(관리항목)	제품의 품질이 단체 표준수준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표준에 적용된 관 리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 정 관리방법을 규 정하고 있어야 한다.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관리를 실시 하여 그기록을 활 용하고, 공정관리자 가 규정대로 실시 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 하고 이에 따라 실시 하고 있어야 한다.
2. 배합	1. 배합비율 (관리항목)			
3. 혼합	1. 시멘트량 2. 수량 3. 골재량 4. 혼화재량 5. 혼합시간 (검사항목)			
4. 성형	1. 겉모양 2. 치수 (관리항목)			
5. 양생	1. 진동(압축)시간 (관리항목) 1. 온도 2. 시간			
비 고 1.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공정수를 증감하거나 검사 또는 관리항목을 증감할 수 있다.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1. 형틀 2. 재료 계량장치 3. 믹서 4. 자동유압성형기 또는 이와 동 등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설비 5. 양생설비 6. 적재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 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 의 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 어야 한다
<p>비고 1. 형틀은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밀도가 있어야 1일 성형량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p> <p>2.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료의 계량장치는 개별 계량하여야 하며 1배치분의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p> <p>3. 소요의 양생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를 소유하되 양생실의 크기는 성형기의 1일 최대성형량 을 양생할 수 있는 충분한 체적이어야 한다. 또한 양생실의 내부온도를 관리할 수 있는 측정 설비가 설치되어있고 보온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p> <p>4. 공정관리 단서규정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설비는 갖추기 않아도 된다.</p>	

4. 제품관리

심사사항 검사항목	구 비 요 건		
	제품의 품질기준	검 사 방 법	이 행 사 항
	<p>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은 단체표준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p>	<p>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규정하여야 한다.</p>	<p>○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정개선 및 제품의 품질향상에 활용하여야 한다. ○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검사자가 단체표준 및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걸모양 2. 치수 3. 압축강도 4. 동결융해시험후 압축강도 5. 흡수율 6. 투수계수 			<p>○ 걸모양 및 모양에 대하여는 단체표준 수준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를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 압축강도를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 동결융해시험후 압축강도를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 흡수율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 투수계수를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p>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제품검사의 항목은 중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동결융해시험후 압축강도검사의 경우는 보통호안블록 및 다공성호안블록, 다공성옹벽블록에 대하여 적용하고, 연 1회 이상 외부공인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동일 자재 및 공정제품 중 종류 및 크기가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1건의 성적서로 상호 인정할 수 있다. 3. 투수계수시험은 다공성블록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시험·검사 설비의 관리

주요 설비명	구비요건
	<p>○ 해당 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의 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도·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17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와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p> <p>○ 정밀도 및 정확도를 시험,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 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 검사설비의 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관리자는 시험, 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p>
<p>1. 골재시험용 기구</p> <p>2. 치수측정용 기구</p> <p>3. 콘크리트시험용 기구</p> <p>4. 압축강도시험기</p> <p>5. 흡수율시험설비</p> <p>6. 시료절단기 및 코어채취기</p> <p>7. 투수계수 시험설비</p>	<p>1. 골재시험이 가능한 장치를 갖고 있어야 하며, 저울은 필요한 용량, 정도를 가져야 한다. 다만, 외부 의뢰하는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에 시험의뢰하여야 한다.</p> <p>2. 치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이어야 한다.</p> <p>3. 슬럼프, 염화물량 및 콘크리트 강도시험이 가능한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AE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기량의 측정이 가능한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p> <p>4. 압축강도시험기는 KS F 2405의 요구사항에 따른다.</p>
<p>비고</p>	<p>1. 골재 시험용 설비중 자재관리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인기관에 시험의뢰하거나 인수검사 성적서를 활용하는 경우는 갖추기 않아도 된다.</p> <p>2. 6항의 설비는 외부사용계약을 맺어 이용할 수 있다.</p> <p>3. 7항의 설비는 다공성블록에 대하여 적용한다.</p>

6.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심 사 사 항	구 비 요 건
1.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계획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표준화 교육 전문 기관 또는 연합회에서의 교육훈련 실적이 있어야 한다.
2. 품질관리 담당자 및 기술계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과 규모에 적합하게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담당자와 기술계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 사내규격의 제정, 개정 등에 대한 총괄 - 상품 또는 가공품의 품질 수준의 평가 - 각 공정에 있어서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 조언 및 부문간의 조정 - 공정에 생기는 이상, 고충 등에 관한 처치 및 그 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종업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추진 - 외주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불합격품의 조치 - 해당 제품 품질검사 업무 관장
3. 불만처리 및 로트 추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내부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보와 불만사례 등에 대하여 로트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조치하고 있어야 한다.
4. 작업환경 및 안전시설 등의 관리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7.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번호	검사항목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 (n)	판정기준		비 고
				Ac	Re	
1	겉모양	인증구분별 재 고 량	3	0	1	현장 또는 외부시험
2	치수		3	0	1	〃
3	압축강도		3	0	1	〃
4	동결융해시험후 압축강도		3	0	1	〃
5	흡수율		3	0	1	〃
6	투수계수		3	0	1	〃
7	표시		1	0	1	〃

비고 1. 시료가 무거운 물건이거나 성질상 운반이 곤란한 경우에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에서 육안시험이 가능한 1번,2번항에 대해 제품의 품질을 시험할 수 있다.
(근거: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9, 2, 마, 1)

2. 4번, 6번항은 해당사항이 있을때만 실시한다.

3. 제품심사 및 시판품조사시에는 재고량 중에서 보통호안블록, 보통옹벽블록, 다공성 호안블록 또는 다공성옹벽블록별로 시료를 채취하되 7번항은 대표시료로 한다.

4. 단, 옹벽용 패널식 전면판에 대해서는 6개의 완제품에 대한 시료를 적용한다.

8.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구분

번호	시험항목	결함구분		
		경 결 함	중 결 함	치 명 결 함
1	겉 모 양	◎		
2	치 수	◎		
3	압축강도		◎	
	-85%이상, 100%미만			◎
	-85%미만			
4	동결융해시험후 압축강도		◎	
	-85%이상, 100%미만			◎
	-85%미만			
5	흡 수 율		◎	
6	투수계수		◎	
7	표시사항	◎		

9. 표시방법

상품의 단위	표시장소	표시방법	표시내용
대형 : 적재단위별 1매 이상 중소형 : 적재단위별 2매 이상	외면 또는 포장 띠	스티커 또는 라벨 및 기타부착 가능한 방법	1)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지름 20mm 이상포장 띠는 10mm 이상 2)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3)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4) 블록의 종류
납품서 마다	납품서	인쇄	1)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지름 10 mm 이상 2)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3) 단체표준 인증번호 4)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5)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단체표준인증 단체명 7) 블록의 종류

10. 인증구분

단체표준번호	표준명	종류 또는 등급
SPS-KCIC0001-0703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	보통호안블록(대형, 중소형) 보통옹벽블록(대형, 중소형) 다공성호안블록(대형, 중소형) 다공성옹벽블록(대형, 중소형)

비고 : 인증의 구분은 종류별, 제품 치수별로 하되, 제품의 치수는 인증서 후면에 표시한다.
(제품치수 표시방법 : W폭×L길이×H두께)

단, 중복된 치수의 경우 구분을 위해 제품형상 등을 표시할 수 있으나 그 성능, 기능, 시공 후 형상 등은 표시할 수 없다.

11. 현장평가시 기술적부분 해석

<p>9. 시험방법</p> <p>9.1 압축강도시험</p> <p>비고 3 시편의 절단이 불가능한 제품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다만 블록의 제조에 사용한 콘크리트로 제작하고 블록과 동일 조건으로 양생하여야 한다.</p>
--

시편의 절단이 불가능한 제품의 구분 해석

- 1) 제품에 철근이 삽입된 제품
- 2) 대형 제품

[별표 8]

인증서 변경 시 첨부 자료 및 후속조치

순번	통보내용	첨부자료	후속조치	추가심사일수
1	담당자, 전화번호 변경		인증업체 기본정보 변경	
2	상호 변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변경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 사본 4.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5. 기존 인증서 원본 6. 재발급 비용 입금 	문서확인	
3	대표자 및 소유권 변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변경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 사본 4.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5. 제조설비, 검사설비, 이전 및 공장 가동 증빙 자료 6. 기존 인증서 원본 7. 재발급 비용 입금 	단순변경 : 문서확인 단, 첨부자료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	
4	인증기업 공장의 이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변경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 사본 4.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5. 제조설비, 검사설비, 이전 및 공장 가동 증빙 자료 6. 기존 인증서 원본 7. 재발급 비용 입금 	(신청서류 검토 후)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실태조사	최소 1인/1일 조사
			(인증서 발급 후) 특별공장심사	최소 2인/1일 심사
5	인증등록 조직의 부도, 양도, 양수 또는 합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변경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 사본 4.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5. 양도양수계약서(공증) 6. 기존 인증서 원본 7. 재발급 비용 입금 	단순변경 : 문서확인 단, 첨부자료가 부적절한 경우는 실태조사를 실시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실태조사	최소 1인/1일 조사
6	기 인증 품목의 변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변경신청서 2. 해당 품목 시험성적서 등 3. 인증서 원본 4. 재발급 비용 입금 	단순변경 : 문서확인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실태조사	최소 1인/1일 조사

순번	통보내용	첨부자료	후속조치	추가심사일수
6	종류(호칭, 등급) 추가	단체표준 제품인증 신청서(종류추가) 또는 인증 변경신청서	종류추가심사 또는 문서확인 및 실태조사 호칭추가심사	최소 1인/1일 실태조사 동일종류(형상)의 경우 공인기관시험성적서 확인 (단, 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공장에서 생산된 시료를 채취한 것에 한하여 인정)
	종류(호칭, 등급) 축소	1. 인증변경신청서 2. 인증서 원본	문서확인	
7	자진반납	1. 자진반납 신고서 2. 인증서 원본	문서확인	
8	폐업		인증취소	
9	조직의 개편, 증가 및 축소 조직도	조직도	사후관리 시 확인 및 실태조사	
10	생상공정, 설비, 공법 변경		사후관리 시 확인 및 실태조사	
11	인증 서류의 개정 및 관련 표준류의 중요한 변경 또는 신규 추가 사항 발생	개정된 인증 서류 및 신규 추가 사항	사후관리 시 확인	
12	기타 인증시스템상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동 사항		실태조사 및 특별공장심사	최소 1인/1일 조사
13	인증서의 훼손 또는 분실, 기타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요청	1. 재발급 요청 공문 2. 인증서 원본(훼손 시) 3. 재발급 비용 입금	인증서 재교부	
14	고객/이해관계자의 심각한 불만	불만사항 접수 기록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실태조사 및 특별공장심사	

인증심사 결과 판정 기준

1. 적용범위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공장심사,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 제54조에 따른 공장이전심사 및 제55조에 따른 시판품조사·특별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 판정기준

1) 공장심사(최초심사/사후관리)

심사 평가방식이 적부(적합,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개선/시정조치를 포함하여 모든 평가항목이 적합해야 한다.

2) 제품심사

① 최초심사/사후관리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단체표준의 인증심사기준 이상일 경우 적합/합격으로 처리한다.

② 시판품조사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단체표준의 인증심사기준 이상일 경우 적합/합격으로 처리한다.

[비고] 인증심사기준은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인증받은 자에 대한 처분 기준

1. 일반기준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처분기준이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또는 연속하여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3) 제5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그 인증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을 승계한다.
- 4) 제64조에 따른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인명의 피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를 함께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취소		
2. 인증받은자가 인증관련 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기간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개선명령	표시정지3월	인증취소
3.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	표시정지3월	인증취소
4. 품질관리담당자를 3월이상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	표시정지3월	인증취소
5. 표시인증시 지정한 표시방법 등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선명령	표시정지3월	인증취소
6. 사후관리의 보고 결과 또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의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가. 사후관리 보고 결과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 요인으로 판정한 경우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나. 시판품조사 결과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표시위반 등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개선명령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3개월
다. 시판품조사 결과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표시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라. 현장조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 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개선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마. 현장조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핵심 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바.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7. 표준위반 제품에 사용된 자재, 시설, 또는 공장상태 등으로 보아 표준위반(중결함이상) 사실을 인증받은 자가 제품생산 이전에 미리 알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인증취소		
8. 생산 중단 기간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상 계속된 경우	인증취소		
9. 부도, 폐업, 표준의 폐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표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인증취소		
10. 시판품조사, 공장심사 및 특별공장심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인증취소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의 세부사항

검사항목	경 결 함	중 결 함	치명결함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겉모양 •치수 및 배근 •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축강도(85% 이상) - 압축강도(85% 미만) - 흡수율 •투수계수 •표면층의 두께 	◎ ◎ ◎	◎ ◎ ◎	◎	

1. 결함등급 분류기준

결함등급	분류기준	비 고
치명결함	그 제품을 사용 또는 유지 보관하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처럼 예상되는 결점 및 주요 최종 제품의 기본적인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결점	KS A 3101
중 결 함	치명 결점은 아니지만 검사 단위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결점	〃
경 결 함	검사 단위의 실용성 또는 유효한 사용, 조작 등에 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예상되는 결점	〃

[별표 11]

인증심사일수

심사구분	품목수	심사일수	비고
<input type="radio"/> 인증심사 <input type="radio"/> 사후관리(공장심사) <input type="radio"/> 사후관리(공장심사+제품심사) <input type="radio"/> 특별공장심사(공장이전심사 외) <input type="radio"/> 변경심사	1개	1일 (인증심사는 2일)	2인 1조 (2일 이상 심사 시 종류(등급, 호칭)추가 심사 병행 시에 추가 일수 없음)
	2~3개	2일	
	4개 이상	3일	
<input type="radio"/> 사후관리(제품심사) <input type="radio"/> 종류(등급, 호칭)추가 심사 <input type="radio"/> 특별공장심사(공장이전심사) <input type="radio"/> 확인심사 <input type="radio"/> 우수단체표준확인서 교부심사	전품목	1일	2인 1조

※ 우수단체표준확인서 교부심사시 면제 및 경과조치사항

- 1) 우수단체표준확인서 교부심사시 당해연도 사후관리(제품심사에 한해)는 면제할 수 있다.
- 2) 사후관리(공장심사 또는 공장심사+제품심사)와 우수단체표준확인서 교부심사를 동시에 신청한 업체는 별도의 비용, 추가심사일수 없이 중복 평가항목에 대해 우수단체표준 기준으로 평가하여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수수료 및 비용

1. 위원회 위원의 여비

인증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 위원심의 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한다.

2. 수수료 및 비용

구 분	금 액
1) 기본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00원(품목 추가 시 1품목당 250,000원 추가) ○ 제품심사만 실시 시 면제
2) 인증심사원 출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 출장기간은 공장심사 또는 제품심사에 필요한 일수와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2명으로 산정한다.
3) 인증심사원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만원 단위 미만 절사)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수당산정의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하고, 수당 산정 인원은 2명으로 한다. 다만,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일수의 2분의1을 수당으로 추가할 수 있다.
4) 제품시험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료·인건비·재료비·감가상각비·시설유지비 등 시험·검사를 위한 실비로서 인증단체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으로 정한 금액 다만, 요령 제13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제품시험·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 금액 ○ 제품심사·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 금액
5) 인증서 변경 신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0원
6) 시료운반·조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별표 13]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I. 단체표준 인증표시

1.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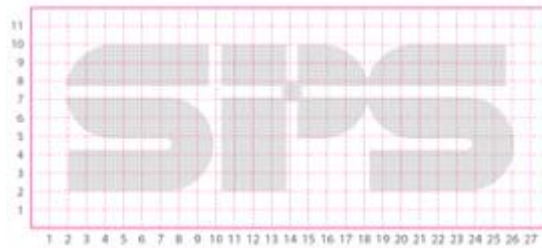
1) 기본형

<단체표준 인증제품 표시>

<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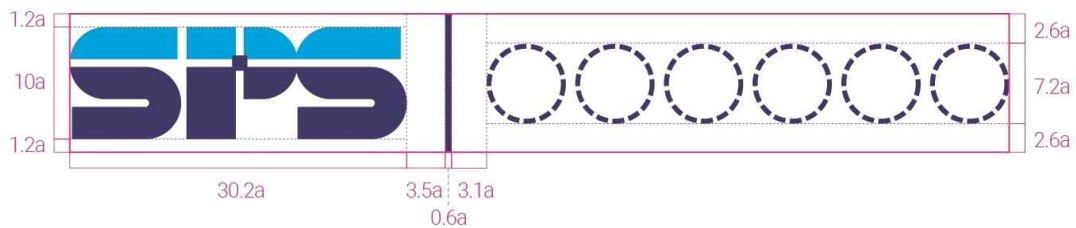


<작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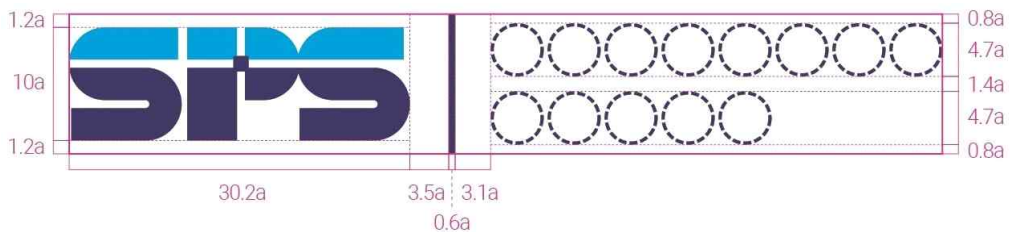


2) 인증단체명 표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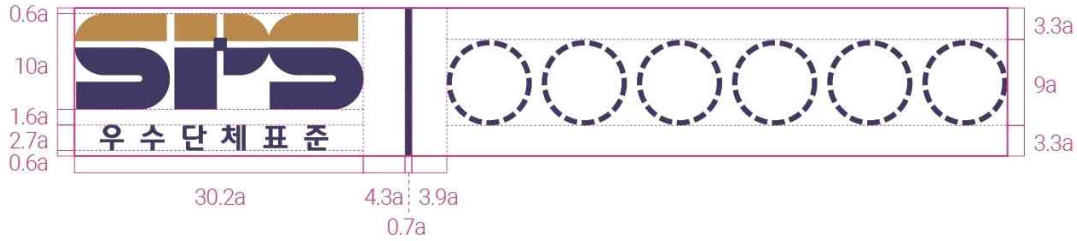
<단체표준 인증제품 표시 - 인증단체명 8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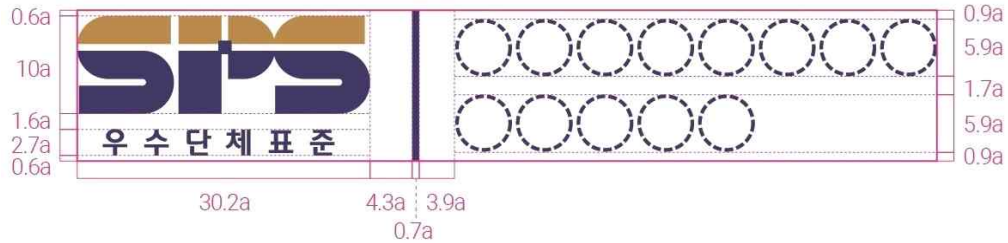
<단체표준 인증제품 표시 - 인증단체명 9자 이상>



<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 - 인증단체명 8자 이내>



<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 - 인증단체명 9자 이상>



2. 표시대상

- 1) 단체표준 인증제품 표시: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하는 단체표준 인증제품
- 2) 우수 단체표준 표시: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 중 제18조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조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표시방법

1) 기본형

① 색상

가. “SPS” 표시 상부 1/3은 시안(cyan)색 , 하부 2/3는 남색으로 한다. 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의 경우 상부 1/3은 금색으로 한다.

나. 시안색은 CMYK C100(PANTONE 299 C), 남색은 CMYK C100 M90 Y25(PANTONE 2747 C), 금색은 CMYK C5 M35 Y75 K25(PANTONE 873 C)로 한다. 시안색·남색·금색이 표시대상 제품 등의 색상과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다른 색으로 할 수 있다.

② 크기: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 등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인증표시를 표현할 수 있다(가로와 세로 길이의 비율은 유지해야 한다).

2) 인증단체명

① 색상: 인증단체명과 세로구분선은 남색으로 한다.

② 서체: 국문서체는 LH Bold, 영문서체는 양평군체 Bold로 한다.

③ 그 밖의 사항

가. 인증단체명은 두 줄로 표기할 수 있다.

나. 표시대상 제품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세로구분선을 생략하거나 인증단체명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II. 단체표준 인증 공장 표시판

1. 표시

1) 기본형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표시판>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표시판>



2. 표시대상

1)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표시판: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2)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표시판: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 중 제18조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3. 표시방법

1) 기본형

- ①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290mm로 한다.
- ② ‘단체표준 인증 공장’ 및 ‘우수 단체표준 인증 공장’의 서체는 LH Bold로 하며, 크기는 각각 120pt 및 105pt로 한다(1pt = 0.35mm).
- ③ 인증단체명, 인증번호 및 인증품목(표준)명을 표기할 때 색상은 남색으로 하고, 국문서체는 LH Bold, 영문서체는 양평군체 Bold로 한다.
- ④ 인증번호 및 인증품목(표준)명 글자의 크기는 45pt로 한다.
- ⑤ 모든 표기 요소는 앞판을 기준으로 가운데로 정렬한다.
- ⑥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하며, 뒷판의 색상은 단체표준 인증공장의 경우 남색으로,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경우 금색으로 도장한다.

2) 보조 표시판을 추가하는 경우: 인증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보조 표시판에 인증번호와 표준명을 적어 표시판 아래에 부착한다.

- ① 보조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35mm로, 세로는 최소 60mm로 한다. 표시하려는 인증품목의 개수에 따라 세로의 길이는 늘릴 수 있다.
- ② 보조 표시판은 기본형 표시판의 오른쪽 끝에 맞추어 부착한다.

경영검토 절차 및 기준

인증단체의 장은 매년 제품인증시스템의 적절성에 대해 경영검토를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규 및 표준 또는 조직 운영상에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시 적합성 유지를 위하여 경영검토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구 분	세부 절차 및 기준
1. 경영검토 보고서	<p>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경영검토 자료를 분석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경영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 운영 목표 및 성과 (관련 성과평가 결과) 2) 내부심사 및 외부심사 결과 (외부기관의 평가 포함) 3) 시정조치, 예방조치 및 개선 관련사항 4)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의한 인증획득 조직 심사만족도 등) 5)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결과 6) 기타 관련 법규 변경사항 7) 공정성 관리 결과 8) 이전 경영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2. 경영검토 회의 개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영검토 회의 일정 등 개최 계획을 수립한다. 2) 경영검토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회의록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품인증시스템 및 운영 절차의 효과성 개선 ② 표준 및 관련 법규와 관련된 인증조직의 개선 ③ 자원의 필요성
3. 경영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영검토 회의 결과를 관련 인원에게 송부하여 시정조치를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경영검토에서 논의된 부적합사항 또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를 따른다. 3)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제품인증시스템 문서 개정을 한다. 4) 승인받은 조치 결과를 다음 연도 경영검토에 반영하여야 한다.

내부심사 운영 절차

제품인증업무의 이행상태와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 및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제품인증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점검은 다음의 내부심사 업무절차 및 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수행 단계	세부 절차 및 기준
1. 내부심사 기본원칙	1) 심사대상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심사원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심사는 자격이 인정된 자에 의하여 실시한다. 3) 필요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내부심사 계획 수립	매년 말에 다음 연도의 내부심사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인원에게 통지하며,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심사목적 및 심사범위 2) 심사대상 인원, 심사기간, 진행일정 및 주요 심사내용 3) 이전심사 결과 및 미결사항에 대한 확인사항
3. 내부심사 실시	1) 심사원은 관련 문서 및 심사대상 인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내부심사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심사원은 점검표에 따라 증빙문서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진행업무 및 결과와 적용 요구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심사원은 심사 중 즉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대상 인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한다. 4) 심사원은 심사가 완료된 후 팀원 및 심사대상 인원과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결과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해 협의한다.
4. 심사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1)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내부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① 심사 목적 ② 심사대상 인원 ③ 심사 기간 ④ 중점 심사 요소 ⑤ 심사결과 종합 평가 ⑥ 분야별·항목별 심사 상세 내용 ⑦ 내부심사 점검표 2) 심사원은 승인받은 내부심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대상 인원에게 통지한다. 3)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대상 인원은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회신기간 내에 시정 및/또는 시정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심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심사원은 시정조치 결과 및 효과성을 확인하며,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후속되는 경영검토 전까지 확인하여 경영검토 시 반영하도록 한다. 5) 심사원은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6) 심사결과를 경영검토 보고서 작성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

제품인증시스템의 운영 중에 발생한 문제점의 시정 및 재발방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문제점의 발생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위한 업무는 다음의 절차에 준한다.

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필요성 검토

구 분	시정조치 대상	비 고
1) 내부심사 부적합사항	- 내부심사 결과 중요 부적합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요청 및 관련 인원에 동일/유사 문제점 발생방지 사전조치 요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 필요성 결정
2) 외부심사 부적합사항	- 인정심사 또는 외부평가 결과 중요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요청 및 관련 인원에 동일/유사 문제점 발생방지 사전조치 요구	
3) 불만 및 이의 제기 처리	- 중요하거나 반복되는 인증획득 조직의 불만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청 및 대하여 관련 인원에 동일/유사 문제점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요구	
4) 경영검토 결과 및 기타	- 부적합 사항 또는 권고사항 중 시정조치 관련 사항 - 평가관리 관련 타 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정보 입수 시, 조치 필요성을 판단하여 관련 인원에 동일/유사 문제점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요구	

2. 조치 요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되는 경우 관련 인원에게 조치를 요구한다.

3. 원인조사 및 측면조사

조치를 취할 대상자는 문제점의 근본원인(Root Cause)을 조사하고, 시정/개선의 범위확인을 위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점이 더 있는지 측면조사(Lateral Search)를 실시한다.

4. 조치 계획 수립

조치를 취할 대상자는 근본원인 조사 및 측면조사 결과를 기초로 재발방지/발생방지 방법을 정하고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1개월 이내에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조치가 불가능한 지연사유를 보고한다.

5. 조치 실시 및 결과보고

조치를 취할 대상자는 조치 계획에 따라 조치(시정) 및 시정조치/예방조치를 실시하며, 조치가 완료되면 원인조사 결과, 측면조사 결과 및 시정조치/예방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효과성 확인 및 후속조치

조치 내용 및 조치 결과가 적절한지, 문제의 원인이 제거되었는지 또는 재발/발생이 방지되는지 등 효과성을 확인하고 후속되는 경영검토에 반영되도록 한다.

단체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의 내용 · 시간 · 주기

과 정	내 용	시 간	
		양성교육	정기교육 (기간)
1. 경영간부	1) 단체표준화제도와 정책방향 2) 단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전략 3)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최근 동향 및 쟁점 4)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 기법 사례 5) 단체표준화와 품질경영 추진을 위한 경영간부의 역할 6) 표준화 관계 법규 및 국가표준 시책 7) 그 밖에 단체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6시간 (1년)
2. 품질관리 담당자	1) 산업표준화법령 및 하위규정 2) 단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개요 3) 통계적인 품질관리기법 4)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실시 5) 단체표준 인증제도 및 사후관리 실무 6) 품질관리담당자의 역할 7)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0시간	16시간 (3년)

[별지 제1호]

위 축 장

성 명 :

소 속 :

귀하를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 5조에 의거하여 단체표준 제·개정·확인 및 폐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0 년 월 일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인)

[별지 제2호]

() 위원회 회의록

PAGE : /

일시		장소		NO.	심사(인증) -	
안건						
성회요건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재적위원 : 명 참석위원 : 명)					
참석자	직책/성명	소속	서명	직책/성명	소속	서명
	위원장					
의결사항						
심의사항	의결내용				비고	
특기사항 및 기타						

(* 주 :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경우 회의록에 구체사항을 명기함)

단체표준 이해관계인 합의성 판단 근거자료

1	단체표준명		
2	제정/개정 구분	<input type="checkbox"/> 제정	<input type="checkbox"/> 개정
3	작성기관		

	이해관계인 합의성 충족 판단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표준(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선정하고 COSD기관을 포함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체 홈페이지와 사무국의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 시스템(sps.kbiz.or.kr)에 30일 이상 예고를 진행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과정(자체 의견수렴, 사무국 요청에 따른 제심사 포함)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접수되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C-1.	<p>◎ 이해관계인 의견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인 합의 회의 개최 : - 공청회 개최 : <p>◎ 이해관계인 주요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인 : - 주요내용 1. 2. <p>(※ 첨부자료 별첨 가능)</p>		
C-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된 의견이 이해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에 해당하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p>◎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신청단체장의 평가</p> <p>★ 이해관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가 아니라고 평가한 근거 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필수)</p> <p>(※ 첨부자료 별첨 가능)</p>		

작성자	소속/직책	성명 및 서명 (인)	작성일자

위 축 장

성 명 :

소 속 :

귀하를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 19조 및 제20조에 의거하여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한 (□ 단체표준인증위원회, □ 단체표준공정성위원회) 위원으로 위 축합니다

위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0 년 월 일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인)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심사위원회, 단체표준인증위원회, 단체표준공평성위원회) 위원으로 관련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심의 또는 평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심의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심의 대상(기업, 업체)과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없고, 기타 압력을 받은 바 없으며,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3. 심의 대상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또는 향응을 받지 않는다.
4. 본인 또는 본인 소속기관의 직원이 심의 또는 평가 대상에 대해 3년 이내에 표준개발, 인증을 위한 지도, 자문, 컨설팅, 사내교육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알린다.
5.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심의 대상 이해관계자 및 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상기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민·형사상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소 속 :

- 생 년 월 일 :

- 성 명 : (서명, 날인)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귀 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근무처		⑥ 직 위	
	⑦ 근무처 소재지		⑧ 근무처 전화번호	
⑨ 소지 자격증		(자격증 번호 :)		
		(자격증 번호 :)		
		(자격증 번호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25조 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등록 및 심사원증의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2. 인증업무규정 제25조 1항에서 정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1부.
3. 증명사진 2장
4.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귀 조합/협회에 등록된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 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15조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직무교육 이수 의무를 준수한다.
- 나.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별표 11] 을 단체표준인증에 준용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다.
- 다. 인증심사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는 심사 대상, 이해관계자 및 인증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 라. 상기 내용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소 속
인증심사원

(인)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귀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현황

성명	생년 월일	정규직/ 위촉직/ 기타	위촉 기간	직무교육		령 [별표1] 적격 여부		경력		
				교육 일자	교육 기관	① 기술사·기사 등 자격 ② 학위() ③ 품질관리담당자 ④ 기타(KS인증심사원)	분야 (코드)	근무처	주요 업무	기간

구
비
서
류

1. 인증심사원의 적격성 증빙자료(KS인증심사원증, 국가기술자격증,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수료증, 경력증빙 등)
 2. 인증심사원 직무교육 수료증
 3. 경력증명서(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주요업무담당 등을 기재한 근무기관 직인날인 필요)
- *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 세부현황은 엑셀표로 작성 제출 가능

우리 조합(협회)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2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 ○ ○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p>제 호</p> <p>단체표준인증심사원증</p> <div data-bbox="391 488 635 80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padding: 20px;">사진</div> <p>홍길동</p> <p>인증단체의 장</p>	<p>단체표준인증심사원증</p> <p>소 속 : 〇〇〇 인증단체 성 명 : 홍길동 생년월일 : 년 월 일</p> <p>위 사람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15조 제3항 및 우리 협회/조합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 조 제*항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심사원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유효기간 : 20 . . . ~ 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인증단체의 장</p>
--	---

앞 면

뒷 면

제5조 (비용부담) 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심사·시험비용의 부담은 산업표준화 법시행규칙 운용요강 및 연구원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기밀유지 등) ○ ○ ○ ○ ○ ○ 은 KOLAS 인증기관으로서 단체표준 시험업무를 진행할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문적이고 정확하며 공정한 방식으로 시험업무를 수행하며, 시험업무의 신뢰성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2. 이해상충이나 이권 다툼에 관여하지 않으며,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고객이나 고용주에게 정보를 누설하지 않으며 연관을 갖지 않는다.
3. 업무상 취득한 상대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4. 단체표준 시험업무를 매개로 하여 인증된 조직 또는 인증신청조직에 대하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관련기관의 수익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7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양 기관중 어느 일방의 협약 해지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 장 ○ ○ ○

○ ○ ○ ○ ○ ○
○ ○ ○ ○ ○

2. 공장의 일반현황

o 종업원(C) 현황

(단위 :명)

NO	총인원(합계)	사무직	기술직	생산직
1				

※ ()에 외국인, 파견근로자, 공장내 소사장 등을 포함할 것

o 공통 생산현황

총 자본금	백만원	공장 판매실적(A)(연)	백만원
경 상 이 익(B)(연)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연구개발 투자비 (연구개발비/A)	%
단체표준 보유수	종	기타 인증 수	의무 ()개
			임의 ()개
기 타 생 산 품		제품에 대한 원자재의 원가 비율	%
원자재 공급업체의 독과점 상태	상 (), 중 (), 하 () (해당란에 ○표 하시오)		
회 사 연 혁			
특 기 사 항			

o 품목별 생산현황

표 준 번 호	SPS-	SPS-	SPS-
생 산 능 력(연)	(단위)	(단위)	(단위)
생 산 실 적(연)	(단위)	(단위)	(단위)
판 매 실 적(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 출 실 적(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단체표준제품 생산계획(연)	(단위)	(단위)	(단위)
소 요 원 자 재			
한국으로의 수출 실적 (해외기업에 한함)	(단위)	(단위)	(단위)
	US\$	US\$	US\$
※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품목별 생산현황” 표를 복사하여 다음 페이지에 추가 작성 요망			

3 공장심사 평가항목

1. 품질경영: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1항목) ※ ISO 9001 인증기업은 품질경영 관리 평가항목(1.1~1.5) 모두 적합(예)으로 평가	적합여부
1.1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 전체 차원의 활동을 위하여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비고 · 경영책임자: 인사권, 예산집행권, 자원의 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장(회사)의 최고위자	
1.2 [★ 핵심품질] 단체표준 최신본을 토대로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을 제·개정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사내표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비고 : 사내표준 구축 및 품질경영, 제품·중간·인수검사 표준, 시험표준, 설비관리, 작업장 환경,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표준	
1.3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리에 반영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비고 · 자체점검 주기(내부심사 등, 년 1회 이상) · 품질경영 계획은 품질방침 및 측정 가능한 품질목표의 등 포함	
1.4 품질경영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의 업무내용과 책임·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비고 :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품질관리담당자 독립적 운영 시 적합(예)으로 평가	
1.5 제안 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비고 : 소집단 활동(학습조직, TFT, 분임조 등)	
2. 자재관리: 일반품질(5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2.1 [★ 핵심품질] 주요 자재관리(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목록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자재에 대한 품질항목과 품질기준을 제품 특성에 맞게 단체표준 및 한국산업 표준을 활용하여 단체표준인증제품 생산에 적합하도록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3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자재에 대한 인수검사 규정 내용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비고 : ·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해 자재별로 로트의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자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품질항목별 시험 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시험의뢰를 할 경우 시험의뢰 주기, 시험 의뢰 내용(시험항목) 등을 규정 · 자재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활용 시 입고되는 자재와 시험성적서에 기재 된 자재와의 로트 일치성 확인	

2.4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할 경우, 검사능력을 보유한 검사자가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합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고 : ·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를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 적합(예)으로 평가 · 검사능력: 검사표준 준수여부(시료 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 설비조작, 시험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2.5 자체 인수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결과(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포함)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6 인수검사 결과를 분석, 활용하고 있는가?	
* 비고 : 일정주기를 정하여 합격률, 사용중 자체 부적합(품)률, 제품품질과 직접관련 품질특성치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체 공급업체의 변경 또는 제조공정, 제품설계, 작업방법 변경 등에 대한 후속조치의 실행 등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공정·제조설비 관리: 일반품질(7항목), 핵심품질(1항목) ※ 외주공정이 있는 경우, 공장심사 시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적합여부
3.1 공정별 관리항목과 항목별 관리사항들을 사내표준에 규정·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고 ·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 각 공정별 관리규정을 단체표준에서 정하거나 제품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 · 공정을 외주하여 보유하지 않은 제조설비가 있는 경우, 외주공정·업체 선정기준, 관리방법을 규정한 사내표준 보유 및 준수 여부(보유: 소유 또는 배타적 사용이 보장된 입차)	
3.2 공정별 중간검사에 대한 검사항목과 항목별 검사 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3 주요 공정관리(자체공정 및 외주공정 포함) 항목에 대하여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하고 공정 및 제품품질 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고 : 주요 공정관리 항목에 대한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할 수 없는 공정은 적합(예)으로 평가	
3.4 [★ 핵심품질] 공정 별 작업표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현장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하며 표준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고 · 작업표준에는 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작업교대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실제작업 내용과 일치 여부 ·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그림 등 활용	
3.5 부적합품은 적정한 식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정 부적합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고 : 유형별 부적합 건본 보유 및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를 확인	

3.6 사내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 배치 상태가 합리적인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고 · 제조설비 : 제품생산이 가능한 성능과 제원 및 용량을 구비 · 공정관리 사내표준에서 외주가공에 대하여 적합하게 규정·관리하고 있는 제조설비는 보유하지 않아도 좋다.	
3.7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설비별 운전 표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으며, 설비의 이력·제원, 수리 및 부품 교환 내역 등을 기록한 설비 관리대장(또는 이력카드)을 관리하고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고 : 정밀도 유지가 필요한 설비는 적정하게 교정 또는 검정하여야 한다.	
3.8 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해 설비운할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설비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할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고 ·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 부위별로 적정 운할유의 선택기준, 운할유의 양, 운할주기, 폐운할유 처리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실시(설비관리 규정에 포함 관리 가능) · 설비운할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적합(예)으로 평가	
4. 제품관리: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2항목)	적합여부
4.1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단체표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고 :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그 외의 제품은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단체표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적합(예)으로 평가	
4.2 로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 내용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고 · 로트 품질 보증 규정 : 로트의 구성 및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로트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로트의 처리방법 등 · 공인시험·검사기관 성적서를 활용하거나 계약에 의해 외부설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검사 주기는 설비를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주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주기가 심사기준에 명시된 경우는 심사기준의 주기를 따른다.)	
4.3 제품시험은 제품품질 항목별로 단체표준과 사내표준에 규정한 기준과 절차·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고, 검사 후 합격·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품질미달 제품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고 : 공인시험·검사기관 의뢰 항목의 성적서는 검사방법에서 정한 주기(횟수)에 일치되는 수만큼 보유하여야 한다.	
4.4 [★ 핵심품질] 제품검사 담당자가 자체에서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비고 · 검사능력: 검사표준 준수여부(시료 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 설비조작, 시험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p>4.5 [★ 핵심품질]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단체표준에 적합하고 과거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검사결과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사내표준에서 정한 허용 값 한계 내에 있는가?</p>	
<p>*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검사 결과 과거 적용기간: 인증심사 3개월, 사후관리 12개월,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심사 3개월 ·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 항목의 결정은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중에서 중결함 이상의 검사항목 중 1개로 한다. · 현장 입회시험이 어려운 중요 품질항목은 시료채취 후 제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p>예 아니오</p> <p><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p>4.6 제품검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품품질 및 품질시스템 개선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p>	<p>예 아니오</p> <p><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p>* 비교 : 데이터 분석(일정주기를 정하여 평균 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의 분석 여부)</p>	
<p>5. 시험·검사설비 관리: 일반품질(2항목), 핵심품질(1항목) ※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 시 해당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p>	<p>적합여부</p>
<p>5.1 [★ 핵심품질] 단체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유하고 있는가?</p>	
<p>* 비교: 시험·검사 설비를 외주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 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 · 시험검사 의뢰는 해당설비로 실시하는 인수검사, 공정검사, 제품검사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실시 · 시험검사 의뢰주기는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수준과 동일한 횟수로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성적서를 보유 · 시험검사 주기를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주기를 따름 	<p>예 아니오</p> <p><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p>5.2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 및 환경이 적정하고, 성능 유지를 위해 각 설비의 관리항목을 규정,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 설비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p>	<p>예 아니오</p> <p><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p>*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온도, 습도, 조명, 전기, 수도시설 등), 시험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의 확보 여부 · 설비관리항목(점검항목·점검 주기·점검방법 등) 	
<p>5.3 시험·검사설비의 측정표준 소급성(정밀·정확도 유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대상설비, 주기 등)하고 교정주기에 따라 외부 공인기관의 교정 후 교정성적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정결과를 측정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p>	
<p>*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해 교정주기를 정하고 교정성적서 또는 표준물질 인증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 교정 또는 표준물질인증서의 성적내용(불확도 또는 보정값)을 측정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 화학 분석 장비의 경우, 인증표준물질과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함. 	<p>예 아니오</p> <p><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6.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 관리: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p>6.1 [★핵심품질]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불만 제품 로트를 추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p> <p>* 비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Q ISO 10002(품질경영 — 고객만족 — 조직의 불만처리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 해외 인증업체는 한국 내 판매업체가 소비자불만 처리 업무를 수행 • 원자재의 입고 일자 및 인수검사 결과, 제조 일시 및 사용설비,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제품검사, 출고일시, 판매장소 등 확인 	<p>예 아니오</p> <p><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p>6.2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구매정보(규격, 사용법, 시공방법, 설명서 등) 및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인증 표시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적정하게 제공·표시하고 있는가?</p> <p>* 비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A ISO/IEC Guide 14(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정보에 대한 지침) 및 KS A ISO/IEC Guide 37(소비자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 제품사용 설명서 또는 시공방법 설명서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단체표준별 인증심사 기준의 표시사항을 제품 및 포장에 표시 	<p>예 아니오</p> <p><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p>6.3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 및 종업원 안전, 보건, 복지를 고려한 청정 작업환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p> <p>* 비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 전기·기계 안전요건, 종업원의 안전장비 보급, 안전관리 교육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작업장 환경관리(대상, 범위, 기준, 주기, 평가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p>예 아니오</p> <p><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p>6.4 사내표준에 따라 임직원의 사내·외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팀장급 이상 경영간부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교육을 최근 1년 이내에 이수하였는가?</p> <p>*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Q 10015(품질경영 — 교육훈련 지침)를 토대로 규정 • 계획: 연간 계층별·분야별(자재·공정·제품품질·설비관리·제품생산기술 등), 실시: 최근 3년간 실적 확인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및 단체표준 인증기관의 교육) • 경영간부의 30 % 이상 교육이수 및 미이수 경영간부에 전파교육 완료 시 적합(예)으로 평가 	<p>예 아니오</p> <p><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p>6.5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3개월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p> <p>* 비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자의 근무경력을 포함하되, 업무 공백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만 인정 •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및 직무에 필요한 지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2 및 시행규칙 별표8) • 3년주기의 정기교육은 단체표준 인증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p>예 아니오</p> <p><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4. 자재관리 목록

업체명:

년 월 일 현재

번호	자재명	용도	규격(Spec.)	공급업체	변경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와 같이 자재관리 목록을 확인하였음.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5. 시료채취 내역 및 제품 품질시험 의뢰 현황

1) 시료채취 내역

표준번호	표준명	종류·등급·호칭·모델	재고량	시료 크기	시료 수 (로트번호)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2) 샘플링(시료 채취) 방식 :

3) 공시체 제작방법(해당하는 경우)

- 공시체 제작방법 :
- 공시체 규격 :
- 제작자 :

4) 시험의뢰처(시험기관) :

위와 같이 시료채취 및 시험 의뢰하였음.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6.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 보고서				
회사명 (공장)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			종류·등급·호칭·모델	
심사일자			조치기한	
평가항목 번호	부적합 구분		부적합내용	담당 심사원
	일반 품질	핵심 품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수	합계		개선조치 평가항목 (일반품질)	확인심사 평가항목 (핵심품질)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_____ (인/서명)

단체표준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인증계약서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갑”이라 한다.)과 (이하“을”이라 한다.)는 “갑”이 “을”에 대해 인증한 제품에 관련된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증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인증품목)

표준번호	단체표준명/종류	비고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인증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인증일로부터 3년(인증유효기간까지)으로 한다. 다만, 공장심사 실시결과 인증이 연장되었을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큼 본 계약서도 유효한다.

제3조(권리 및 의무) ① “을”은 단체표준 인증 요구사항을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인증 받은 범위에 한하여 제품·포장·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 받은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③ “을”은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을 광고 그 외의 방법(판매촉진용 인쇄물 등)으로 제3자에게 표시 또는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인증을 받고 있지 않은 제품과 혼동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④ “갑”이 인증 관련 업무가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와 기록의 조사, 공장 또는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 및 임직원과의 면담 등에 “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한다.

제4조(단체표준마크 등의 표시) 제품인증 받은 “을”은 해당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각 호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1. 단체표준의 명칭 및 번호
2. 단체표준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 등급, 호칭
3. 단체표준 인증번호
4. 인증받은자의 제조처, 제조일
5. 인증기관명
7. 단체표준인증마크

제5조(사용 조건 및 범위) ① “을”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체표준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인증제품은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 등에 인증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동의 한다. “을”은 인증제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해 인증서의 사본을 배포할 수 있다.
- ③ “을”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 공장에서 생산된 인증제품에 한해서 단체표준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기타 인증마크표시에 대한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용 제품의 제공) “갑”이 제품심사 등의 시험용 제품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갑”은 시험 등에 의해 생긴 시험용의 제품 등의 해체 및 손상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제7조(사후관리) ① “갑”은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의거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 ② “을”은 인증만료일 3개월 전에 공장심사 신청서를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원칙적으로 “을”에게 사전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이 사후관리의 목적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 ④ 또한 “갑”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판품조사 및 특별공장심사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1. 불량 단체표준 제품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민원발생 우려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개선조치 결과 확인·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 ⑤ “을”은 공장심사 전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⑥ “을”은 사후관리에 관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법률,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의 조치) “갑”은 관련법률,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되었을 경우 “을”에게 통보해야하며 통지방법은 문서 또는 인터넷 등 열람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 ① “을”은 인증제품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을”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의 검토 결과 개정된 표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에 대해 사후관리를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인증 및 인증취소 공표 등) ① “갑”은 “을”의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정보를 “갑”의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공표의 기간은 본 인증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

- ② “갑”은 “을”의 제품이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처분규정에 의거하여 인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갑”의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 및 불만의 처리) ①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인증업체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KS Q ISO/IEC 17065 적합성평가-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을”에게 있다.

- ② “을”은 모든 고객 불만 기록을 유지하여야하며, “갑”이 요구 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지위의 승계) “을”이 제3자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을”의 지위를 승계 한다. 또한 “을” 또는 “을”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신속하게 “갑”에게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의 유지) “갑”은 “을”의 인증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인증업무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을”의 승낙 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3조(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의 조치) ① “갑”은 “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 대하여 해당 사항의 시정 및 예방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을”은 시정 및 예방조치를 완료한 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 받은 자가 인증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 표시를 한 경우
2. 인증 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을 그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4.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 등의 광고 이외에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고 오해되는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제14조(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 시정 및 예방조치)

- ① “갑”은 “을”의 공장이 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를 한 경우 “을”에 대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 하여야 한다.
- ② “갑”은 해당 시정 및 예방조치 요청 시 기한을 정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또, “갑”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갑”의 요청에 대하여 “을”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하지 않았을 때, 기한(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조치를 완료한 취지의 보고가 “을”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5조(개선권고, 표시정지, 인증취소) ① “갑”은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 처분규정에 의거하여 개선권고, 표시정지,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의 인증을 정지,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는 인증제품의 제품·포장·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표시를 제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 계약의 해제) 인증기간 만료 또는 인증취소로 인증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이의 불이행에 따라 “갑”및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법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제반 보상 및 사과문의 게재 등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을”은 인증서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인증마크의 모든 표시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품설명서, 홍보물 등 기 제작된 자료라 할지라도 여타의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면 인증마크를 제거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마크”상품이라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여타의 표시 및 문구도 제거해야 한다.”

제17조(인증에 관계되는 비용) “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인증 및 인증유지를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8조(본 인증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 관례를 따르되,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이 협의 하에 결정한다.



단체표준인증서

인 증 번 호 : 제 호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공 장 소 재 지 :
인증계약 유효기간 :
단 체 표 준 명 :
단 체 표 준 번 호 :
종류·등급·호칭·모델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의거 인증심사를 실시한 결과 단체표준과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단체표준 표시를 인증 합니다.

년 월 일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 최초인증일 :
* 변경/재교부사유 :
* 차가 사후관리 완료기한 :

* 최종변경일 :



문서확인번호 : 1234-1234-1234-1234

2024-07-16 10:27:23 [1/1]

[별지 제16호]

인증변경신청서

1. 인증현황 (공통변경사항이 2품목이상일 경우 한건으로 작성해 주세요)

인증업체명				인증번호	
담당부서		직책		담당자명 (휴대폰/ 이메일)	
변경신청 품목	표준명				
	표준번호				
주 소	본 사			TEL	
				FAX	
	공장소재지			TEL	
				FAX	

2. 변경신청내용(상호, 대표자, 주소, 종류(호칭, 등급), 품목, 기타()

변경 구분	변경 내용	첨부서류
상호 변경	변경전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기존 인증서 원본, 재발급 비용 입금
	변경후 :	
대표자 변경	변경전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기존 인증서 원본, 재발급 비용 입금
	변경후 :	
주소변경 <input type="checkbox"/> 이전 <input type="checkbox"/> 추가 <input type="checkbox"/> 축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변경전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제조설비, 검사설비 이전 및 공장기동 증빙자료, 공장 지적도, 기존 인증서 원본, 재발급 비용 입금
	변경후 :	
인증범위변경 <input type="checkbox"/> 품목 <input type="checkbox"/> 종류 (호칭, 등급) <input type="checkbox"/> 축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변경전 :	동일공정 호칭추가시 형틀구입증빙자료, 신청제품 및 기인증제품에 대한 형틀, 제품사진(동일형상증빙 및 치수확인 가능하게), 공인(KOLAS)기관 시험성적서(전시시험항목), 회사표준 중 품질기준 페이지 사본, 인증서원본, 재발급 비용(33,000원) 입금 일부 종류(호칭, 등급) 반납시 인증서원본반납, 7일 이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 (근거: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미통보시: 거래정지처분등)
	변경후 :	
기타 변경	변경전 :	관련 증빙서류
	변경후 :	

상기와 같이 당사의 인증사항을 변경하고자 인증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귀사의 절차에 따라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귀중

확인방법
<input type="checkbox"/> 서류확인 <input type="checkbox"/> 특별공장심사 <input type="checkbox"/> 실태조사

우)130-100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33-19 콘크리트회관 3F / 전화 02-2241-7381 / 전송02-2241-7385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 주기 변경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대표자 성 명
	주 소		
	담 당 자		연락처
사후관리 주기 변경 신청 내용			
단체표준명		표준번호	
변경전 심사주기	<input type="checkbox"/> 공장 () <input type="checkbox"/> 제품 ()	변경후 심사주기	<input type="checkbox"/> 공장 () <input type="checkbox"/> 제품 ()
구비서류	1. 인증위원회 심의 결과(회의사진, 회의록, 방명록 등) 2. 인증 사후관리 심사주기 변경 사유 3. 인증기업 의견서 4. 심사주기 변경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16조 제3항에 의거, 단체표준 인증 사후관리 주기 변경 승인을 위해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인)</p> <p style="margin-top: 50px;">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p>			

[별지 제21호]

단체표준인증 공장 관리 기록부							접수번호			
회사 현황	업체명 (공장)			대표자			사업자 번호			
	소재지	본사	(우)			Tel.				
						Fax.				
		공장	자체생산(), OEM()	(우)		Tel.				
						Fax.				
	설립년월일				규모	대지(m ²)			건물(m ²)	
	인 허 가 현 황	단체표준인증 보유 수								개
		KS인증 보유 수					개	최근 KS 정기심사일		
		ISO/KSA9001 취득일								
		외국인증 수				기타 인증 수	(의무)	개	(임의)	개
자 본 금(백만원)										
매 출 액(백만원)										
경상이익(백만원)										
종업원 수(명)		계	경영간부	기술직	사무직	생산직	기타			
인증 품목	인증번호		최초 인증일자		단체표준명		단체표준번호			
품질 관리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자격 구분				자격증번호					
설비	제조·가공설비									
	시험·검사설비									
사후 관리 현황	구분		일자		사후관리 결과					

변동내용 내역서 (지위승계 및 공장이전)

심 사 항 목	내 용	변 동 사 항
1. 품질경영	(1) 조직 및 직원	
2. 자재관리	(1) 자재 표준 (2) 자재검사 실시	
3. 공정·제조 설비관리	(1) 공정별 관리규정 (2) 공정별 작업표준 (3)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실시 (4) 심사기준에 의한 설비보유 (5) 설비관리	
4. 제품관리	(1) 제품의 품질 및 검사표준 (2) 제품의 품질 및 검사실시	
5. 시험·검사 설비관리	(1) 심사기준에 의한 설비보유 (2) 설비관리	
6.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1) 품질관리 담당자	

※ 별첨 : 1. 제조 및 검사설비 보유 현황

제조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승계후(이전후)에도 종전의 관리수준 이상을 유지하여 단체 표준 인증제품을 생산할 것이며 변동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20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자체점검 점검표

자체점검일		점검자	
점검내용	전년도 지적사항 확인 및 점검의견		개선방향
1) 각종서류			
2) 심사미 실시 업체증빙자료			
3) 심사결과 안내			
4) 인증심사원 교육계획 및 실적관리			
5) 부적합 발생 업체 보완서 류 관리 및 처분(보고)			
6) 기타서류			
7) 전년도 부적 합 개선여부			
지시사항			